

# 『지방자치단체 조례(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10.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별책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여 성 가 족 부



# 목 차

I. 조례 우수사례 .....	1
1. 도시건설·재생(23개) .....	1
2. 안전(6개) .....	11
3.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에 따른 “모·부성권” 용어 정비·개선(5개) .....	12
II. 위원회 우수사례 .....	13
III. 위원회 개선과제 .....	135

# I. 조례 우수사례

## 1. 도시건설·재생(23개)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p><b>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b>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7.30.&gt;</p> <p>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7.30.&gt;</p> <p>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p> <p>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10.20.&gt;</p> <p>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10.8.&gt;</p>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b>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패적성 및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lt;개정 2013.8.1.&gt;</p>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b>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p>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p><b>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li> <li>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li> <li>3. 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li> <li>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li> <li>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li> <li>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화장실 유지보수</li> <li>8.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li> <li>9.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li> <li>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li> <li>11.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ol>
5	(전라북도)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8조(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b>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li> <li>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li> <li>3.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li> <li>4. 보안등의 보수</li> <li>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li> <li>6.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li> <li>7.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ol>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p><b>제20조(요금의 감면)</b>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0.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li> <li>2.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li> <li>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li> <li>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li> <li>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li> <li>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li> <li>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li> <li>2.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li> <li>3. 30명 이상의 단체</li> <li>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li> </ol>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li> <li>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li> <li>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li> <li>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전문개정 2009.1.8.]</p>
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p><b>제 17조(입장료의 감면)</b>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li> <li>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li> <li>3.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li> <li>4. 공익 또는 학술목적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li> <li>5. 3세 이하의 유아와 그 보호자 1인</li> <li>6. 65세 이상의 노인</li> <li>7. 학교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단체로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 및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공원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li> <li>8.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li> <li>9.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li> <li>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lt;개정 2015-01-12&gt;</li> <li>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li> <li>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li> <li>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및 의사자 중 부상 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 &lt;개정 2015-01-12&gt;</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8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p><b>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b> ① 시장은 애국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li> <li>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li> <li>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li> <li>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li> <li>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9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p><b>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b>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li> <li>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li> <li>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li> <li>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li> <li>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방안</li> <li>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때에는 그 경관계획의 실행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에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p>
10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p><b>제5조(계획의 수립 등)</b>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li> <li>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부문별, 연차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b>제5조(기본책무)</b>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적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확산(홍보) 2.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각종 개발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 3.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유도 4.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원 등 5.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b>제8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여성가족국장, 건강체육국장, 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5.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13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b>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b>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 5.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9.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b>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b>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b>제1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5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주택실장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6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b>제2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위원은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와 대구광역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유고시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15.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0.>
17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13조(구성)</b> ①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특례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동 위원회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18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 1명 이상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2명 이상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번호	구분	조례규정
		8.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하는 산지의 이용계획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회의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9. 「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관위원회의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1명 이상 10.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19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1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례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상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상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20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8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글로벌투자통상국장·농정국장·녹색국장·건설교통국장 2. 도시계획·산업입지·건축·교통·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강원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3명 이상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번호	구분	조례규정
		<p>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p> <p>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p> <p>8.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p>
21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lt;개정 2010. 12. 31, 2012. 6. 8, 2014. 10. 17, 2016.07.08&gt;</p> <p>1.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5명</p> <p>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p> <p>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p> <p>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p> <p>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9. 「경관법」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 12. 31, 2016.07.08&gt;</p>
22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p><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산업실장, 농정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4.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li> <li>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li> <li>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li> <li>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lt;개정 2013.10.30.&gt;</li> <li>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lt;개정 2015.6.1.&gt;</li> <li>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lt;개정 2013.10.30.&gt;</li> <li>8. 「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li> </ol>
23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lt;개정 2010. 12. 31, 2012. 6. 8, 2014. 10. 17, 2016.07.0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5명</li> <li>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li> <li>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li> <li>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li> <li>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하는 자 2명</p> <p>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9. 「경관법」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 12. 31, 2016.07.08&gt;</p>

## 2. 안전(6개)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p><b>제16조의2(재난지역 주민대피)</b> ① 본부장은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경우 주민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가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일 경우에는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1.04.]</p>
2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p><b>제7조(입장의 제한)</b>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li> <li>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li> <li>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3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p><b>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b>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대전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b>제7조(교육 및 홍보)</b>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어린이 안전 교육·홍보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b>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b>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6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b>제3조(적용범위)</b> ① 이 조례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에 따른 “모·부성권” 용어 정비·개선(5개)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조례	<b>제28조(모·부성의 권리 보장)</b>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조례	<b>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b>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광주광역시) 양성평등 조례	<b>제2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b> 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경상북도) 양성평등 조례	<b>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b> 도지사 및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b>제23조(특별휴가)</b>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여성·남성공무원 모두 포함)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II. 위원회 우수사례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원인조사단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장은 대책본부장이 조사단원 중에서 지명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의 관계 분야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li> <li>2. 그 밖에 지진재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조사단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지진피해 원인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인조사단의 의결을 거쳐 조사단장이 정한다.</p>
2	(대구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p> <p>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 지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li> <li>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li> <li>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p><b>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b>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4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3조(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b> ①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5.10.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난 결정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반환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지역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lt;개정 2015.10.13.&gt;</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정해양국장, 재난안전본부장, 축산산림국장, 보건복지국장, 해당재난 수습 주관 실·국장과 지역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요청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3.]</p> <p>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p> <p>2. 그 밖에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5	(강원도)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조례	<p><b>제3조(지원)</b>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순찰 등 공익활동</p> <p>2.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p> <p>3. 각 지역 방법대 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p> <p>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p>
6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p><b>제3조(기금의 용도)</b>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p> <p>나. 재난예방 대주민 교육,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p> <p>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라.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p> <p>마.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p> <p>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복구 및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p> <p>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p> <p>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보수·보강 및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신설</p> <p>나.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관정개발, 임시송수관로 설치, 기존 용수시설의 보수·보강, 소형·간이 양수장 및 하천·저수지 취수용 간선 설치, 저수지 준설 등)</p> <p>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목의 용도</p> <p>가. 수해·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p> <p>나.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p> <p>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재난안전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p> <p>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p> <p>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4군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p> <p>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가축감염병 중에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p> <p>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p> <p>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p> <p>가. 풍수해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p> <p>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p> <p>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p> <p>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p> <p>나.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양성·관리 및 심리상담 활동</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 목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발생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긴급상황 대응</p> <p>② 제1항의 규정 외 항구복구 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4.1.]</p>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b>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읍·면·동 및 가입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방재전문가 등 30명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p> <p>④ 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p> <p>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li> <li>2. 제3조제5항의 위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장, 행정복지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 6. 22.)</p> <p>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li> <li>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li> <li>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9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li> <li>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li> <li>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li> <li>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li> </ol> <p>③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p>
10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b>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p> <p>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p> <p>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1의 관련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li> <li>2. 그 밖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li> </ol> <p>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14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업무 소관 본부장(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업무 소관 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 건강업무 소관 과장,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 소속 의료인 1명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li> <li>2. 환경·보건·복지 또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li> <li>3. 환경성질환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li> <li>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12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p><b>제32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원은 증원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호, 제4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li> <li>2. 시 기후변화대응·적응 관계 공무원</li> <li>3.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기업체 포함)</li> <li>4.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녹색식생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lt;신설 2016.7.1.&gt;</li> </ol>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1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li> <li>2. 담당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3명</li> <li>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li> <li>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14	(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7조(위원의 위촉)</b> ① 협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동부지역본부장, 환경보건과장(개정 2014.8.1) 나. 22개 기초의제21 의장, 전남의제21 분과위원장</p> <p>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의제21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나.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담당국장,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p> <p>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p> <p>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15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p><b>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5.9.30.&gt;</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p>1. 물산업 관련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5.9.30.&gt;</p>
16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p><b>제8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p> <p>1. 물 재이용 업무 담당 공무원 2.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3. 수질·물 재이용 관리,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7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p><b>제11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3.12.2.&gt;</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0.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li> <li>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li> </ol>
18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b>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19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p><b>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업무 담당 국장</li> <li>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li> <li>3. 수질·물 재이용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2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1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li> <li>2. 담당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3명</li> <li>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li> <li>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5.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기관, 지역시민단체 관계자</li> </ol> <p>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관련업무 과장으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b>제6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b>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30.> 1. 물산업 관련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3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b>제8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물 재이용 업무 담당 공무원 2.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3. 수질·물 재이용 관리,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4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b>제11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0.13.]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25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b>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녹색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물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26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p><b>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업무 담당 국장</li> <li>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li> <li>3. 수질·물 재이용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27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남도의회 의원</li> <li>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li> </ol>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하수도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p>
28	(부산광역시) 빗공해 방지 조례	<p><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빗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li>3.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9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p><b>제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li>2.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li> <li>4. 위원회는 간사는 빛공해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li> </ol>
30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3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li> <li>3. 상수도 수용가 또는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li> <li>4. 민간단체 임직원</li> <li>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3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	<p><b>제11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li> <li>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li> <li>3.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li> </ol>
3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	<p><b>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33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	<p><b>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lt;개정 2015.5.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 위원은 공무원 또는 건축 및 디자인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lt;신설 2015.5.14.&gt;</p> <p>[제목개정 2015.5.14.]</p>
3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p><b>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35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p><b>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⑦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3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p><b>제9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등)</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해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li> <li>2. 그 밖의 본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p> <p>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37	(울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p><b>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li> <li>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38	(경기도) 건축기본 조례	<p><b>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p> <p>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p> <p>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p> <p>⑤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39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p><b>제11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p> <p>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p> <p>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p>
4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p>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41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p><b>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에너지·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li> <li>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42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p><b>제11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해야 한다.</p> <p>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li> <li>2. 그 밖의 본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⑤ &lt;삭제 2015. 10. 30&gt;</p>
43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p><b>제11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해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li> <li>2. 그 밖의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p> <p>⑤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4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p><b>제3조(건축정책위원회)</b>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lt;개정 2014.8.13., 2016.7.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책기획관</li> <li>2. 건축·도시계획·도시경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li> <li>3. 건축·도시계획·경관·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li> </ol> <p>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지적과장을 간사로 보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p>
4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p><b>제6조(소위원회)</b>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lt;개정 2015.10.8.&gt;</p> <p>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11.11.&gt;</p> <p>③ 삭제 &lt;2015.10.8.&gt;</p> <p>④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9.11.11.&gt;</p>
4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p><b>제6조의2(전문위원회)</b>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심의로 같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5.10.8.]</p>

번호	구분	조례규정
4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p><b>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b>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lt;개정 2016.5.19.&gt;</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시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구청장(구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 임명한다. &lt;개정 2106.5.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li> <li>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li> <li>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li> <li>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li> <li>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li> </ol>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p> <p>⑤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5.10.8.]</p>
4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b>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lt;개정 2006. 12. 27, 2010. 3. 3&gt;</p> <p>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8. 12. 31, 2010. 3. 3&gt;</p> <p>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0. 3. 3, 2013. 5. 22&gt;</p> <p>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0. 3. 3&gt;</p> <p>⑤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9조(제2항 전단을 제외한다)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gt;&lt;전문개정 2005. 8. 3&gt;</p>
4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p><b>제9조(전문위원회)</b>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50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0조(소위원회)</b>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같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6-02-22&gt;</p> <p>④ 제6조제4항·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5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1조(전문위원)</b>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조경·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52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1조(소위원회)</b> &lt;개정 2016.7.1.&gt;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lt;개정 2015.10.1.&gt;</p>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lt;개정 2015.10.1.&gt;</p> <p>③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5.10.1.&gt;</p> <p>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5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1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b>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lt;본조신설 2015.10.1.&gt;, &lt;개정 2016.7.1.&gt;</p> <p>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lt;신설 2016.7.1.&gt;</p>
54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b>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 관련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6.7.1.&gt;</p> <p>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lt;개정 2016.7.1.&gt;</p> <p>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lt;개정 2016.7.1.&gt;</p> <p>⑤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lt;본조신설 2015.10.1.&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55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4.10.28., 2015.6.19.&gt;</p> <p>② 삭제 &lt;2015.6.19.&gt;</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3.2.28., 2014.10.28.&gt;</p> <p>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03.07.&gt;</p> <p>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lt;신설 2014.10.28.&gt;</p>
56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0조(전문위원회)</b>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5.6.19.&gt;</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lt;개정 2015.6.19.&gt;</p> <p>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lt;신설 2015.6.19.&gt;</p>
57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b>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6.19.]</p>
58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0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b>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6.19.]</p>
5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p><b>제8조(구성 및 임기)</b>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3·5, 2010·5·13, 2013·6·28&gt;</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3·5&gt;</p> <p>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위촉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lt;개정 2013·6·28&gt;</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09.3.5, 2013.6.28&gt;</p> <p>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4]</p> <p>⑥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6.28&gt;</p>
60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3조(전문위원회)</b>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02.11.15., 2010.5.13., 2015.12.31.&gt;</p> <p>② 삭제 &lt;2010.5.13&gt;</p> <p>③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lt;개정 2002.11.15., 2010.5.13., 2015.12.31.&gt;</p> <p>④ 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2.11.15, 2010.5.13&gt;</p> <p>⑤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2.11.15, 2010.5.13&gt;</p>
61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3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b>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임기·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2.31.]</p>
6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p><b>제9조(분야별 전문위원회)</b>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할 수 있다.</p> <p>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그 심의등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 중 “10명”은 “5명”으로 본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6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p><b>제 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b> ① 법 제4조의4에 다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④ 위촉인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p>
64	(경기도) 건축 조례	<p><b>제 15조(소위원회)</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이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li> <li>2. 해당 조사사항의 심의 결정이 완료되는 때까지</li> <li>3. 해당 현장조사 및 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li> </ol> <p>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li> <li>2.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⑦ 소위원회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65	(경기도) 건축 조례	<p><b>제16조(전문위원회)</b> ①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사항 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p> <p>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사항에 대한 질의민원 사항</li> <li>2.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건축민원 심의 신청 사항</li> <li>3. 그 밖에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⑤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p>
66	(강원도) 건축 조례	<p><b>제5조(조직)</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12.31., 2013.9.27.&gt;</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3.9.27.&gt;</p> <p>③ 위원은 5급이상의 도 소속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환경, 경관, 소방, 건축물 설치광고, 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정보기술, 사회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 소속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5. 11. 4, 2007.4.6., 2009.12.31., 2013.9.27.&gt;</p>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모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원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중 5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lt;신설 2013.9.27.&gt;</p> <p>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9.27.&gt;</p>
67	(강원도) 건축 조례	<p><b>제9조(전문위원회 등)</b>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lt;개정 2007.4.6., 2009.12.31.&gt;</p> <p>② 전문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lt;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gt;</p> <p>③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12.31.&gt;</p> <p>④ 삭제 &lt;2007.4.6.&gt;</p> <p>⑤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9.12.31.&gt;</p> <p>⑥ 전문위원회 등은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9.12.31.&gt;</p> <p>⑦ 전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9.12.31.&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68	(충청북도) 건축 조례	<p><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li> <li>3.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li> </ol>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5개 이상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p> <p>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69	(충청북도) 건축 조례	<p><b>제13조(소위원회)</b>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p> <p>⑤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p>
70	(충청남도) 건축 조례	<p><b>제5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업무 담당국장과 소방방호구조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p> <p>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으로 인하여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자치단체 간에 3개 이하, 타 위원회 간에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71	(충청남도) 건축 조례	<p><b>제11조(전문위원회)</b>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나 조사 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p>
72	(전라북도) 건축 조례	<p><b>제10조(소위원회)</b>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장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p> <p>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소위원회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사항 중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p> <p>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를 준용한다.</p> <p>⑥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73	(전라북도) 건축 조례	<p><b>제10조의 2(전문위원회 구성 등)</b> ① 영 제5조의 6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계획 분야</li> <li>2. 건축구조 분야</li> <li>3. 건축설비 분야</li> <li>4. 건축방재 분야</li> <li>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li> <li>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 &lt;개정 2015. 12. 28&gt;</li> <li>7. 조경 분야</li> <li>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li> </ol> <p>②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7조 부터 제15조 까지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9]</p>
74	(전라북도) 건축 조례	<p><b>제17조(구성)</b> ①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lt;개정 2015. 12. 28&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75	(전라남도) 건축 조례	<b>제8조(소위원회)</b>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정위원 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76	(전라남도) 건축 조례	<b>제8조의2(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b> (신설 2015.7.2) 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전문분야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5.7.2)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5.7.2)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7.2)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민원을 심의한다.(신설 2015.7.2)
77	(경상북도) 건축 조례	<b>제4조(구성 등)</b> ① 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3.9, '14.3.6., '15.9.24.> ② 위원은 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문화재·에너지·소방·교통·예술·환경, 통신, 설비 등과 경관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도 위원회는 도지사가,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06.12.28, '09.3.9, '14.3.9., '15.9.24.>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 중 5개를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여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lt;신설 2014.7.7.&gt;</p> <p>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lt;개정 2014.3.6.&gt;</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3.6.&gt;</p> <p>⑦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제5조의5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다. &lt;신설 2014.3.6.&gt;</p>
78	(경상북도) 건축 조례	<p><b>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b>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6 제1항에 따라 도 위원회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09.3.9, '09.9.28, '14.3.6&gt;</p> <p>② 각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09.9.28, '14.3.6&gt;</p> <p>1. 분야별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09.9.28, '14.3.6., 2014.7.7., '15.9.24.&gt;</p> <p>2. &lt;삭제 '15.9.24.&gt;</p> <p>3.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09.9.28, '14.3.6&gt;</p> <p>4.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09.9.28&gt;</p> <p>③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09.9.28&gt;</p> <p>④ 건축전문위원회는 도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lt;신설'09.9.28&gt;</p> <p>⑤ &lt;삭제 '15.9.24.&gt;</p> <p>⑥ &lt;삭제 2014.3.6.&gt;</p> <p>⑦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lt;신설 '15.9.24.&gt;</p> <p>⑧ 한옥건축전문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lt;신설 '15.9.24.&gt;</p> <p>⑨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lt;신설'09.9.28., 개정 '15.9.24.&gt;</p>
79	(경상남도) 건축 조례	<p><b>제6조(구성)</b>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3.26.&gt;</p> <p>② 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청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설치광고 및 경관(공간환경을 포함한다),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09.3.26., 2010.8.19., 2014.10.10.&gt;</p> <p>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p> <p>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14.10.10.&gt;</p> <p>⑥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2.23.&gt;</p>
80	(경상남도) 건축 조례	<p><b>제12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b> &lt;변경 2015.12.23.&gt; 제12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lt;변경 2015.12.23.&gt;</p> <p>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p> <p>②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p> <p>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민원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 등을 위하여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p>
81	(경상남도) 건축 조례	<p><b>제12조의3 (분야별 전문위원회)</b> &lt;변경 2015.12.23.&gt;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p>
8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15.10.6.&gt;</p> <p>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에너지·경관·교통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자중에</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lt;개정 2009.8.5., 2013.7.26., 2015.10.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가 추천하는 자</li> <li>2.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li> <li>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li> <li>④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li> </ol>
8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p><b>제6조(소위원회)</b>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8.5.&gt;</p> <p>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p> <p>④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p>⑥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8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p><b>제6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b>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계획 분야</li> <li>2. 건축구조 분야</li> <li>3. 건축설비 분야</li> <li>4. 건축방재 분야</li> <li>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li> <li>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li> <li>7. 조경 분야</li> <li>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li> <li>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li> <li>10. 사회 및 경제 분야</li> <li>11. 그 밖의 분야</li> </ol> <p>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업무 담당사무</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관 또는 행정시의 건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p>
8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p><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b>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li> <li>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3. 경관 관련 전문가</li> <li>4. 경관사업 시행자</li> <li>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li> <li>6. 지방의회 의원</li> </ol> <p>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p> <p>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8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p><b>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li> <li>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87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p><b>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원이 된다.</p> <p>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88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p><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b>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p> <p>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3. 경관 관련 전문가</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p> <p>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89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p><b>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90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p><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b>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91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b>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92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b>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 의회가 추천한 시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93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b>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94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p><b>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b>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li> <li>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li> </ol> <p>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95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p><b>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5.12.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li> <li>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li> <li>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li> <li>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li> </ol>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96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p><b>제2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b>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li> <li>2.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li> <li>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li> <li>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8.]</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97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p><b>제32조(경관위원회의 운영)</b> ① 영 제25조에 따라 시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하고, 경관위원회 전체회의는 20명으로 운영한다.</p> <p>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li> <li>2.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li> <li>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li> <li>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li> </ol>
9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p><b>제3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6조 제9항과 관련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위원회는 1분과 소위원회와 2분과 소위원회로 나누며,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운영은 10명으로 한다. 또한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2. 1분과 소위원회 :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li> <li>3. 2분과 소위원회 :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li> <li>4. 그 밖에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 중 2인의 위원과 공무원 1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li> </ol> <p>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99	(경기도) 경관 조례	<p><b>제24조(공동위원회의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li> <li>4. 공동위원회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li> <li>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100	(경기도) 경관 조례	<p><b>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b>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p> <p>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도지사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101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p><b>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b>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3.7.26., 2014.7.11.&gt;</p> <p>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p> <p>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t;개정 2013.7.26., 2014.7.11.&gt;</p> <p>3. 도 소속 공무원</p> <p>4. 도 경관위원회 위원</p> <p>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t;개정 2013.7.26.&gt;</p> <p>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p> <p>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p>
102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p><b>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b>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lt;단서삭제 2014.7.11.&gt;</p>
103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p>제17조의3(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3.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7.11]</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04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p><b>제17조의4(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li> <li>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항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li> <li>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li> </ol>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7.11]</p>
105	(충청북도) 경관 조례	<p><b>제7조(공동위원회의 운영)</b>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106	(충청남도) 경관 조례	<p><b>제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p> <p>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li> <li>2. 경관사업관련 시민단체·전문가</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경관사업시행자 4. 해당지역의 충남도의회 의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관리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관리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07	(충청남도) 경관 조례	<b>제1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0.04.30., 2013.12.30.>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회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경관위원회는 안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8	(충청남도) 경관 조례	<b>제16조(공동위원회의 구성)</b>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충청남도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경관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 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경관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의 임기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된다.
109	(전라북도) 경관 조례	<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b>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3. 경관 관련 전문가</p> <p>4. 경관사업 시행자</p> <p>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p> <p>6. 전라북도의회 의원</p> <p>7.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p> <p>⑨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110	(전라북도) 경관 조례	<p><b>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p> <p>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p>
111	(전라북도) 경관 조례	<p><b>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도지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p> <p>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p> <p>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112	(전라남도) 경관 조례	<p><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경관사업 시행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구성 및 운영한다.(개정 2015.2.26)</p> <p>② 삭제(2015.2.26)</p> <p>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5.2.26)</p> <p>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2.26)</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2.26)</p> <p>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2.26)</p> <p>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신설 2015.2.26)</p> <p>⑧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2.26)</p> <p>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신설 2015.2.26)</p> <p>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신설 2015.2.26)</p> <p>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5.2.26)</p>
113	(전라남도) 경관 조례	<p><b>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개정 2013.4.5)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3.4.5, 2015.2.26)</p> <p>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3.4.5)</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3.4.5., 개정 2015. 12.31.)</p> <p>④ 사전경관 협의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별도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3명 내외로 사전경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는 소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사이버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또한 협의내용은 경관계획 및 점검목록을 검토 협의하여 그 결과를 협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3.4.5)</p>
114	(전라남도) 경관 조례	<p><b>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신설 2013.4.5) 영 제23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4.5, 개정 2015.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신설 2013.4.5, 개정 2015.2.26)</li> <li>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4.5)</li> </ol>
115	(경상북도) 경관 조례	<p><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b>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li> <li>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3. 경관 관련 전문가</li> <li>4. 경관사업 시행자</li> <li>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li> <li>6. 지방의회 의원</li> </ol> <p>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⑧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16	(경상북도) 경관 조례	<p><b>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b>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법 제3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117	(경상북도) 경관 조례	<p><b>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li> <li>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li> <li>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li> </ol>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p>
118	(경상북도) 경관 조례	<p><b>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li> <li>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li> <li>3.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수 있다.</li> </ol>
119	(경상남도) 경관 조례	<p><b>제 1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환경산림국장·도시교통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4.10.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회 의원</li> <li>2. 관계 공무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도시·건축·환경보전·공공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0.10.>
120	(경상남도) 경관 조례	<b>제19조(전문위원)</b>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0.> ② 전문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며, 위원회 심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기 등은 제16조를 준용한다.
121	(경상남도) 경관 조례	<b>제20조(소위원회)</b>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122	(경상남도) 경관 조례	<b>제24조(공동위원회)</b>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b>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2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p><b>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p> <p>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12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p><b>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b>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126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p><b>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b>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2. 제23조제3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6호의 심의 대상</li> </ol>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1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p><b>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b>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8.]</p>
12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p><b>제57조 (구성 및 운영)</b>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lt;개정 2008.7.30., 2010.1.7.&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8.7.30.&gt;</p> <p>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lt;개정 2008.7.30., 2010.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회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li> <li>2. 시 공무원 4명</li> <li>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li> </ol> <p>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08.7.30., 2016.3.24.&gt;</p> <p>⑤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p> <p>⑧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lt;개정 2010.1.7.&gt;</p> <p>⑨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lt;개정 2008.7.30.&gt;</p> <p>⑩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1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p><b>제58조(분과위원회)</b>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08.7.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li> <li>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li> <li>3. 제3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li> </ol> <p>②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lt;개정 2008.7.30.&gt;</p> <p>③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08.7.30.&gt;</p> <p>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b> ①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lt;개정 2008.7.30.&gt;</p> <p>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신설 2015.1.2.&gt;</p>
1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b>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p> <p>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④ 제57조제4항부터 제10항,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10.4.]</p>
13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5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b>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lt;개정 2012. 10.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원</li> <li>2.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li> <li>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t;개정 2012. 10. 31&gt;</li> <li>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li> <li>5. 위촉위원이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li> <li>6.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0. 30><전문개정 2011. 8. 10>
13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2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12. 10. 31&gt;</p> <p>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p> <p>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p> <p>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lt;전문개정 2011. 8. 10&gt;</p>
13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3조(공동위원회)</b> ① 삭제 &lt;2014. 7. 9&gt;</p> <p>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p> <p>④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lt;전문개정 2011. 8. 10&gt;</p>
13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3조(자문단 등)</b>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5.7.10.&gt;</p> <p>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3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b>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1.>[본조신설 2014.5.20.]
13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88조(구성)</b>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4006호) ③ 삭제 <2008.12.30. 조례 제4006호> 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0 조례 제4484호]
13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91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1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5호)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96조의2(공동위원회의 운영)</b> [신설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89조부터 제90조의2까지,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4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8조(구성)</b>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10-05, 2014-01-09&gt;</p> <p>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01-12, 2014-01-09&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원</li> <li>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전문개정 2011-04-11]</li> <li>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4-01-09&gt;</li> <li>5.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0-02-22, 2014-01-09&gt;</li> <li>6.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lt;신설 2014-05-26&gt;</li> </ol>
14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72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14-01-0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li>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lt;개정 2014-10-06&gt;</li> <li>3.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li> </ol> <p>②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11-04-11, 2014-01-09&gt;</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01-09&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4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77조(공동위원회의 운영)</b>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68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01-09]
14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4조(광역도시계획자문단의 설치·운영)</b>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문별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제1항의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14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8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운영 등)</b>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기획단과 도시기본계획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14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3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b>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30.>
14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7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0.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5.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 및 건설 관련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5.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8.1.> 1. 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6.3.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방재·환경·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0.1.1., 2011.1.1, 2013.8.1.> ⑤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1.>

번호	구분	조례규정
14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81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lt;개정 2013.8.1., 2014.6.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lt;신설 2014.6.30.&gt;</li> <li>2. 경미하거나 분량이 많아 심의에 장시간 소요될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항 &lt;신설 2014.6.30.&gt;</li> <li>3.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조건부 의결한 내용의 반영여부 확인 &lt;신설 2014.6.30.&gt;</li> <li>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lt;신설 2014.6.30.&gt;</li> </ol>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07.8.1.&gt;</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48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86조의2(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b> 제77조제2항·제5항, 제78조제1항, 제81조제5항, 제82조, 제83조, 제86조의 규정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적용한다 &lt;본조신설 2007.8.1.&gt; &lt;개정 2013.8.1.&gt;</p>
14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p><b>제5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b>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p>
15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p><b>제58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li> <li>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li> </ol> <p>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5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p><b>제5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제58조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5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1조(구성)</b>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p> <p>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의회 의원</li> <li>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3. 토지이용·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관광·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li> </ol>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중임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3. 30.)</p> <p>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0)(개정 2015. 3. 30.)</p>
15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5조(분과위원회)</b> ①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li> <li>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li> </ol> </li> <li>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1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2분과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li> <li>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ol> </li> <li>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li> </ol>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5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p><b>제66조(공동위원회)</b>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15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p><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8.7.4., 2010.3.18.&gt;</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lt;개정 2008.7.4.&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7.5.7., 2008.7.4., 2013.8.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8.5.]</li> <li>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lt;개정 2005.10.31., 2013.8.5.&gt;</li> <li>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8.5.]</li> </ol>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05.10.31., 2008.7.4., 2010.3.18., 2013.8.5.&gt;</p> <p>⑤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국가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8.5.]</p> <p>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p>
15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p><b>제12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5.10.31., 2008.7.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의 심의 &lt;개정 2008.7.4.&gt;</p> <p>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lt;개정 2008.7.4.&gt;</p> <p>다.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lt;개정 2008.7.4., 2013.8.5.&gt;</p> <p>라.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p> <p>2. 제2분과위원회</p> <p>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단, 지구단위계획의 병행 입안에 한한다) &lt;개정 2008.7.4.&gt;</p> <p>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lt;개정 2008.7.4.&gt;</p> <p>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lt;개정 2008.7.4.&gt;</p> <p>라.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② 제1항의 각 호에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lt;개정 2007.5.7., 2008.7.4.&gt;</p>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7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05.10.31., 2008.7.4.&gt;</p> <p>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lt;개정 2008.7.4.&gt;</p> <p>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08.7.4.&gt;</p> <p>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7.4.&gt;</p>
157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p><b>제18조(공동위원회 운영 등)</b>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따라 쓴다. &lt;개정 2008.7.4., 2009.6.18., 2010.3.18.&gt;</p>
158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p><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3.7.26.&gt;</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3.13.&gt;</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lt;개정 2013. 7. 26, 2015. 3. 6&gt;</p> <p>1. 도의회 의원</p> <p>2. 도의 공무원</p> <p>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lt;개정</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013.7.26.&gt;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 3. 6</p>
159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p><b>제 11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lt;개정 2013. 7. 26, 2015. 3. 6&gt;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lt;개정 2009. 3. 13, 2013. 7. 26, 2015. 3. 6&gt;            3. 삭제 &lt;2009.3.13.&gt;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09.3.13.&gt;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5. 3. 6&gt;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신설 2009. 3. 13, 개정 2015. 3. 6&gt;</p>
160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p><b>제 12조(공동위원회)</b> ① 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3.7.26.&gt;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0.10.29., 2012.7.13., 2015. 7. 24&gt;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분과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7. 26, 2015. 3. 6&gt;</p>
161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p><b>제 14조(분과위원회)</b>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 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 10. 10, 2015. 5. 15&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법 제9조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계획과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2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b>제 15조(공동위원회)</b> ① 법 제30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0>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0. 10, 2012. 12. 28, 2014. 6. 27, 2015. 5. 15>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3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b>제 15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64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p><b>제16조(공동위원회)</b>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165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p><b>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1. 5. 6, 2011. 11. 11&gt;</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1. 5. 6&gt;</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 3. 6, 2011. 5. 6&gt;</p> <p>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시·건축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lt;개정 2009. 3. 6&gt;</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lt;개정 2011. 5. 6, 2014. 1.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5. 6, 단서신설 2014. 1. 6&gt;</li> <li>2. 도의 공무원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lt;개정 2014. 1. 6&gt;</li> <li>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도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11. 11, 단서신설 2014. 1. 6&gt;</li> </ol>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11. 5. 6, 2014. 1. 6&gt;</p> <p>⑦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lt;개정 2011. 5. 6, 2014. 1.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li> <li>3. 제10조제6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li> </ol> <p>⑧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66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p><b>제11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lt;개정 2011. 5.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lt;개정 2011. 11. 11&gt;</li> <li>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lt;개정 2011. 5. 6, 2011. 11. 11&gt;</li> <li>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ol>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하고, 위원구성은 중복할 수 없으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lt;개정 2011. 5. 6&gt;</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1. 5. 6&gt;</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5. 6&gt;</p>
167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p><b>제12조(공동위원회)</b>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lt;개정 2011. 5.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lt;개정 2011. 5. 6&gt;</li> <li>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lt;개정 2011. 5. 6&gt;</li> <li>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선임된 각각의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1. 5. 6&gt;</li> </ol>
168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p><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2. 12)</li> <li>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관광과장·해양항만과장·건설도시국장·문화산업디자인과장·농업정책과장·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 6. 17, 2008. 7. 15, 2010. 2. 12, 2010. 12. 27, 2013.12.26, 2014.8.1, 2015.7.13., 2016.7.7.)</li> <li>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전라남도 의회 의원, 다만, 직무관련 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회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은 제외한다.(단서조항 신설 2013.12.26) 2. 전라남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도시설계 토목·건축·주택·교통 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6)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⑧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6)
169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b>제13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라. 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0. 10) 마.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0. 10)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0. 10) 나.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2)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2. 12)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은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170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b>제21조(구성)</b>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위원 중에서 2/3미만. 단, 계획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도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이상
171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b>제23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b>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9인으로 구성하되, 도 건축위원회위원 1/3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b>제1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10.2.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09.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및 도시·건축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09.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13. 7.11> 1. 도 의회 의원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07. 5. 14,'13. 7.1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13. 7.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07.3.2>
173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b>제13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07. 5. 14>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07. 5. 14>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2. 제2분과위원회<개정 '07. 5. 14>

번호	구분	조례규정
		<p>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lt;개정 '07. 5. 14&gt;</p> <p>나.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lt;개정 '07. 5. 14&gt;</p> <p>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lt;개정 '07. 5. 14&gt;</p> <p>3. &lt;삭제'07.5.14&gt;</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07.5.14, '10.2.25&gt;</p> <p>③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10.2.25&gt;</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7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p><b>제2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p> <p>1.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이하</p> <p>2. 도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이상</p> <p>3. 제13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p>
175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p><b>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09.1.15., 2013.3.28., 2014.10.10.&gt;</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시교통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7.6.28., 2009.01.15., 2009.11.12., 2010.11.04., 2011.12.29., 2013.01.31.&gt;</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01.15.&gt;</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lt;개정 2009.01.15., 2009.11.12., 2012.06.28.&gt;</p> <p>1. 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기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0.01.&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 도의 공무원. 단,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lt;개정 2013.03.28.&gt;</p> <p>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소방·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lt;개정 2009.01.15., 2009.11.12., 2013.03.28.&gt;</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09.01.15., 2015.10.01.&gt;</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lt;개정 2009.01.15., 2009.11.12.&gt;</p> <p>⑦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하여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한다. &lt;신설 2013.03.28.&gt;</p>
17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p><b>제11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lt;개정 2009.1.15., 2014.10.10.&gt;</p> <p>1. 제1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lt;개정 2014.10.10.&gt;</p> <p>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lt;개정 2006.10.12., 2009.1.15., 2014.10.10.&gt;</p> <p>3. 삭제 &lt;2006.10.12.&gt;</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lt;개정 2006.10.12., 2009.01.15.&gt;</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7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p><b>제20조(구성)</b>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01.15.&gt;</p> <p>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09.01.15.&gt;</p> <p>1. 위원회 위원. 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p> <p>2. 건축위원회 위원. 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7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p><b>제4조(공동위원회 구성)</b>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라 구성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li> <li>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li> <li>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li> <li>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li> </ol>
17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p><b>제68조(분과위원회)</b>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li> </ol> <p>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5.5.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관한 사항</li> <li>나.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li> </ul> </li> <li>2. 제2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1항 제3호·제4호에 관한 사항</li> <li>나.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li> </ul> </li> </ol> <p>③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18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p><b>제69조(소위원회 운영)</b> ① 심의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b>제15조의5(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b>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1.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본조신설 2012.12.31.] [제목개정 2016.3.24.]
18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b>제15조의6(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b> ① 구청장은 제15조의4제8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②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1.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본조신설 2012.12.31.] [제목개정 2016.3.24.]

번호	구분	조례규정
18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p><b>제42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77조의2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 조정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p> <p>1. 제1분과위원회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 조정</p> <p>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p> <p>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p> <p>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p> <p>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p> <p>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p> <p>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p> <p>⑧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⑨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0.3.2.]</p>
184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p><b>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조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5. 1. 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 따라 두되,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하는 사람(단,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li> <li>2.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p>
185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56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자치구·군의회 의원</li> <li>2. 해당 자치구·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li> </ol>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li> <li>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li> <li>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li> </ol> <p>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 조정</li> <li>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에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li> <li>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li> <li>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li> </ol> <p>⑨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p> <p>⑩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⑪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p> <p>⑫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0.6.30. 조례 제4170호]</p>
18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p><b>제29조(구성 등)</b>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li> <li>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li> <li>3.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li> </ol> <p>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18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p><b>제46조(정비기금운영위원회)</b> ①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에 정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 그 밖에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4-12-15&gt;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⑨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lt;신설 2014-03-10&gt;</p>
188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41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b> 법 제77조의3 제5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조정위원회는 법 제7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6.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lt;본조신설 2010.1.1.&gt;</p>
18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p><b>제4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b>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7.12.14., 2014.12.31.&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12.31.&gt;</p> <p>⑤ 위촉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5.8.14., 2015.12.31.&gt;[전문개정 2007.2.23.]</p>
19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p><b>제46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b>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④ 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⑥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0.8.13.]</p>
191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39조의3(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p> <p>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과 위원장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2.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운영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간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p> <p>2.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p> <p>⑥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p> <p>⑦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p>
192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40조의3(정비기금심의위원회)</b> 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lt;개정 2007·12·17&gt;</p> <p>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7·5·10, 2010·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2.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1·12] &lt;개정 2010·12·31&gt;</li> </ol>
19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11조의3(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b>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10.31.&gt;</p> <p>② 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li> <li>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li> </ol> <p>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10.31.&gt;</li> <li>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i> </ol> <p>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lt;개정 2013.12.2.&gt;</p> <p>⑤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13.12.2.&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5급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28.]</p>
19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24조(구성)</b>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5.10.0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li> <li>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li> <li>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li> <li>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07.17.&gt;</li> <li>5.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09.12.31.]</li> </ol>
19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48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li> <li>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li> <li>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0.20.]</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96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p><b>제11조의5(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b> &lt;조 신설 2015. 8. 7&gt;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p> <p>② 산정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li> <li>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li> </ol> <p>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요구</li> <li>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li> </ol> <p>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p> <p>⑤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197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p><b>제40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b> ①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lt;개정 2013.7.26.&gt;</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p>
19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25조(임기)</b>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따라 시·군에 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5. 14][중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lt;2010. 5. 14&gt;]</p>
199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23조(구성)</b> ① 법 제77조의2에 따라 시·군에 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명 이하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00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b>제11조의3(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b> (신설 2016.3.10.)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신설 2016.3.10.)</p> <p>② 산정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3.10.)</p> <p>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신설 2016.3.10.)</p> <p>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신설 2016.3.10.)</p> <p>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3.10.)</p> <p>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요구(신설 2016.3.10.)</p> <p>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신설 2016.3.10.)</p> <p>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신설 2016.3.10.)</p> <p>⑤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고,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3.10.)</p> <p>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3.10.)</p>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신설 2016.3.10.)</p> <p>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3.10.)</p>
201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p><b>제37조(구성)</b>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p> <p>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군</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10.)</p> <p>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202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27조 (구성)</b> ①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p> <p>③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203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p><b>제25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b> ①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li> <li>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li> <li>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정비사업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4.10.10.&gt;</p> <p>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⑥ 시장·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lt;개정 2014.10.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lt;개정 2014.10.10.&gt;</li> <li>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li> <li>3. 위원이 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lt;개정 2014.10.10.&gt;</li> <li>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lt;본조신설 2010.08.19.&gt;</li> </ol>
20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29조(구성)</b>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 2.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b>제45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담당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206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	<b>제1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20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b>제20조(구성)</b>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도로행정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학식 또는 경험이 많은 자 3.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전문개정 2009.9.29.]

번호	구분	조례규정
208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p><b>제11조(위원회의 설치)</b> ①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5.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회계 자금의 집행 우선순위</li> <li>2. 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획</li> <li>3. 특별회계의 보조, 용자규모 및 용자이율</li> <li>4. 용자금 전용에 따른 용자금 회수결정</li> </ol> <p>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lt;개정 2007.8.17.&gt;</p>
20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p><b>제12조(공동주택관리위원회)</b>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21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p><b>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b>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p>
21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p><b>제8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도시계획조국장과 감사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감사위원 중에서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21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p><b>제1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시의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관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3.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1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b>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b>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 선정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도시계획·건축주택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광주광역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4.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는 3명 5. 그밖에 공동주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이 된다.
214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b>제13조(감사반 구성·운영)</b>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감사반(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시장은 전담 부서를 두어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15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b>제7조(감사반 구성 등)</b>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216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b>제6조(감사반 구성 운영)</b>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21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4조(자문단 구성)</b>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1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b>제4조(검수단 구성)</b>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지별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검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19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검수단은 1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20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4조(구성 등)</b> ① 검수단은 10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221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4조(구성 등)</b> ① 검수단은 7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단지별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p> <p>⑥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도록 한다.</p>
222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4조(구성)</b> ① 검수단은 9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p>
22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p><b>제25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lt;개정 2012.3.15.&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li> <li>2.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p> <p>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lt;개정 2010.7.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li> <li>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li> <li>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li> <li>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p>[전문개정 2009.1.8.]</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24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p><b>제16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제5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은 구성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li> <li>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li> <li>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li> <li>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225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p><b>제23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인천광역시회의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li> <li>3. 그 밖에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li> <li>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li> <li>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li> <li>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226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p><b>제49조(구성)</b> ① 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8·1·10&gt;</p> <p>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6·10·12, 2010·12·31&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2008·1·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li> <li>2.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li> </ol>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08·1·10&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lt;개정 2008· 1·10&gt;</p> <p>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lt;개정 2008·1·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li> <li>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li> <li>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li> <li>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22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p><b>제16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및 공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p> <p>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li> <li>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li> <li>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li> <li>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228	(제주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p><b>제13조(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b> 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공원 또는 녹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0.3.24.&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공원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li> <li>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3. 환경전문가 및 시민단체</li> <li>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2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p><b>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과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li> <li>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상 (단,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li> <li>3. 「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li> <li>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li> <li>5.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li> <li>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li> <li>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li> <li>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li> <li>9.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li> <li>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li> <li>11.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li> </ol> <p>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p> <p>⑥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30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p><b>제7조(공간정보협의회)</b>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6.4.11.&gt;</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lt;개정 2016.4.11.&gt;</li> </ol> <p>③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231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p><b>제4조(공간정보협의회)</b>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5-07-27&gt;</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232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p><b>제7조(공간정보협력체계 구축)</b>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강원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233	(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p><b>제11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3)</p>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5. 13, 2015. 7.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0. 5. 13)</li> <li>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0. 5. 13)</li> <li>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0. 5. 13)</li> <li>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5. 13)</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5. 13)</p>
23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p><b>제 1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p> <p>2.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235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p><b>제 1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236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p><b>제 17조(소위원회)</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p> <p>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를 준용한다.</p>
237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p><b>제 15조(소위원회)</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위원회의 3인 이내의 위원에게 심의·자문 안건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8.17., 2014.9.15.&gt;</p>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호선하여 구성하며,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 중 가로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lt;개정 2009.8.17., 2014.9.15.&gt;</p> <p>③ 제1항에 따라 안건의 검토를 위임하면서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준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한다. &lt;본항신설 2009.8.17.&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38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p><b>제7조(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b>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lt;개정 2015.8.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li> <li>2. 디자인·건축·도시·조경·조형 예술 등 도시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8.14.&gt;</li> </ol>
239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p><b>제11조(소위원회)</b>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2.10.11.&gt;</p> <p>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p> <p>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240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b>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시계획·조경·건축·공공디자인·공공예술·시각디자인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2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p><b>제13조(소위원회)</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242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p><b>제1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12. 12. 28&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2. 12. 28, 2013. 6.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도소속 공무원 2. 도의회 의원 3. 도시계획·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조명·공공예술·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디자인 관련 학회 및 협회, 연구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43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b>제18조(소위원회)</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244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b>제15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그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조형예술·색채·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관련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도시과장이 된다.
245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b>제18조(디자인위원회의 설치)</b> 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를 둔다. ② 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이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사이버자문위원회의 자문범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하며 간사는 디자인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④ 디자인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공간·시각디자인·건축·조경·공공예술·광고물·큐레이터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246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p><b>제23조(소위원회 구성·운영)</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인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8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24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p><b>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b>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li> <li>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lt;개정 2016.3.24.&gt;</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lt;개정 2016.3.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li> <li>2. 도시디자인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li> </ol>
248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p><b>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b>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li> <li>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p>
249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p><b>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장, 건축업무 담당과장, 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등 3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건축·도시계획 및 설계·경관·조경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범죄예방·건축·도시계획 및 설계·경관·조경·안전 등 관련분야의 관계공무원 및 시민단체의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소집, 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p>
250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p><b>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b>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p>
251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p><b>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b>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52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p><b>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b>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p>
253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p><b>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b>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li> <li>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p>
254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p><b>제8조(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b>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종합계획에 심의</li> <li>2.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에 대한 심의</li> <li>3.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li> <li>4.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심의</li> </ol> <p>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의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p> <p>③ 기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p>
255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p><b>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b>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강원도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256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조례	<b>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b>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b>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b>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14조의 경관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한다.
257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조례	<b>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b>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의 전라남도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258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b>제9조(위원회 설치 등)</b>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p>
259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p><b>제8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여성가족국장, 건강체육국장, 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5. 5.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li> <li>2.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li> <li>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4.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li> <li>5.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li> </ol>
260	(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p><b>제10조(협의회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교육감</li> <li>2. 광주지방경찰청장</li> <li>3. 각 자치구청장</li> <li>4. 시의 안전도시업무 담당 실국장, 복지건강업무 담당 실국장,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소방방재업무 담당 실국장 &lt;개정 2012.10.15.&gt;</li> </ol>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li> <li>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3. 안전도시 사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li> </ol> <p>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p>
261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p><b>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b>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를 둔다. &lt;개정 2015.12.18.&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12.18.>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 <신설 2015.12.18.>
262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b>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b>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6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b>제31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9., 2014.12.11., 2015.5.14.>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64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b>제31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업무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대표자 또는 임원 3. 사회복지관련 학과 교수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법률·의료 전문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265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b>제2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 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소관 과장으로 한다.
266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접용료 등 징수 조례	<b>제4조의2(공동구관리협의회)</b> ① 시장은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위원장은 서부산개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 12. 30, 2015. 1. 1, 2015. 2. 25, 2016. 6. 8>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2. 30> 1. 공동구 시설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사업의 시행계획(공사시기, 업체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본조신설 2001. 9. 13>
267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b>제4조(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b> ①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장은 관리자가 되고 간사는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교량관리담당이다. <개정 2008.1.1.>

번호	구분	조례규정
26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p><b>제11조(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9.30)</p> <p>②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이하 “전문가”이라 한다)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269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p><b>제1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태경관 조성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회 위원은 생태경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및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270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2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li> <li>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li> <li>3. 도시계획, 건축, 교통, 항만, 물류, 교육, 문화, 사회복지, 재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271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27조(소위원회)</b>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272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9조(구성 및 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li> <li>2. 시 공무원</li> <li>3.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p> <p>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273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p><b>제6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과학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주택국장, 공보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6.4.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마케팅, 도시디자인, 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도시브랜드 및 도시마케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274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p><b>제9조(소위원회 등)</b>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275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도시경쟁력 업무관련 국장 또는 본부장</li> <li>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이상</li> <li>3. 도시경쟁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276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p><b>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b>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p> <p>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 3에 따른다. &lt;개정 2014.5.2.&gt;</p> <p>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lt;개정 2012.5.11.&gt;[본조신설 2009.12.31.]</p>
277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p><b>제18조의2(임원추천위원회)</b> &lt;신설'09.12.31.&gt; ① 사장 및 감사, 이사(당연직 제외)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p> <p>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278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b>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b>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임원후보의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03.18.>
279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8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글로벌투자통상국장·농정국장·녹색국장·건설교통국장 2. 도시계획·산업입지·건축·교통·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강원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3명 이상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8.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280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13조(구성)</b> ①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특례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동 위원회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p>
281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p><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 1명 이상</li> <li>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이상</li> <li>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li> <li>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li> <li>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2명 이상</li> <li>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li> <li>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li> <li>8.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하는 산지의 이용계획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li> <li>9. 「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1명 이상</li> <li>10.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li> </ol>
28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p><b>제1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p> <p>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③ 특례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상</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상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283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산업실장, 농정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3.10.30.>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5.6.1.>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13.10.30.> 8. 「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284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lt;개정 2010. 12. 31, 2012. 6. 8, 2014. 10. 17, 2016.07.0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5명</li> <li>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li> <li>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li> <li>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li> <li>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li> <li>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li> <li>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li> <li>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li> <li>9. 「경관법」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li> </ol> <p>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 12. 31, 2016.07.08&gt;</p>
285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lt;개정 2010. 12. 31, 2012. 6. 8, 2014. 10. 17, 2016.07.0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5명</li> <li>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명</li> <li>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p> <p>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9. 「경관법」에 따른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p> <p>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 12. 31, 2016.07.08&gt;</p>
286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p><b>제1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5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주택실장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li> <li>2.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li> <li>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287	(대구광역시) 조경 관리 조례	<p><b>제2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5.12.30&gt;</p> <p>② 위원은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와 대구광역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lt;개정 2015.12.30.&gt;</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유고시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lt;개정 2015.12.30.&gt;</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lt;개정 2015.12.30.&gt;</p>
288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p><b>제2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b> ① 영 제32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도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도의회 의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여성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그 밖에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도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이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은 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원 본인이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289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p>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90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b>제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b>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의견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축자산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6.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91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b>제4조(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1. 전라북도, 국토교통부 및 전주시·완주군 혁신도시업무 관계공무원 <개정 2015. 8. 7>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도시계획 분야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사람 <개정 2015. 8. 7> 4. 기타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8. 7> ④ <삭제 2015. 8. 7>
292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b>제12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7.> ② 공동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6.1.7.> ③ 부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과장급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또는 식품안전,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293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94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외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충청북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안전 대응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번호	구분	조례규정
295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구성)</b>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 단위 등의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296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 제3조제5항의 위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소방본 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97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1., 2016.3.1.> 1. 시민안전실장(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4.1.1., 2016.3.1.> 2. 소방안전본부장 <개정 2014.1.1., 2016.3.1.> 3.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번호	구분	조례규정
		<p>4.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역사단장</p> <p>5. 광주광역시교육감</p> <p>6. 광주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제외한다) &lt;개정 2014.1.1., 2016.3.1.&gt;</p> <p>7. 광주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lt;개정 2014.1.1.&gt;</p> <p>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lt;개정 2014.1.1.&gt;</p> <p>9. 제3호부터 제8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기관은 부단체장을 위촉할 수 있다. &lt;신설 2016.3.1.&gt;</p> <p>②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바뀐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gt;</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안전정책관이 된다. &lt;개정 2007.1.1.,2012.10.15., 2014.1.1., 2014.9.1.&gt;</p>
29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05.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재난안전본부장 &lt;개정 2014.9.24.&gt;</li> <li>2. 경기도 지방경찰청장</li> <li>3. 경기도 교육감</li> <li>4. 공군 제3591부대장, 육군3군사령부 군수처장</li> <li>5.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li> <li>6.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7.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li> <li>8. 경기도 약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li> <li>9.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13.]</li> <li>10.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li> <li>11. 경기도의회 의원 2인 [신설 2016.05.17.][전문개정 2014.3.5.]</li> </ol>
29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교육감</li> <li>2. 시 지역관할부대장</li> <li>3. 세종경찰서장</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의 장 5.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6. 재난관리 분야 봉사, 모니터링, 방재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 9. 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② 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7.30)
300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안전본부장, 제1부교육감, 지방경찰청장 <개정 2015.10.13.> 2.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기(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도 지역본부장 3. 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301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구성 등)</b>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02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구성)</b> ① 자문단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3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b>제4조(설치 등)</b> ① 시장은 가로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방안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수립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로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시 산립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가로수(녹지, 조경 등을 포함한다)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가로수·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4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건강도시 중점과제 담당 국장 3. 경제, 교육, 안전, 문화·관광, 공원·녹지, 환경, 교통, 통신, 도시계획 및 개발, 주거, 위생, 공공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건강도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5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b>제6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1. 행정부시장, 각 실·국·본부장, 보건소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건강도시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관련기관 관계자(언론, 환경단체, 봉사단체, 농민 관계자 등)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306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p><b>제10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광주광역시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li> <li>3. 광주광역시 주거 및 도시계획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li> <li>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5.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7. 그 밖에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전문영역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p>
307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5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16.07.19.]</p> <p>② 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2.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7.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0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309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p><b>제5조의2(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및 구·군 소속의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li> <li>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건설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4. 건설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li> <li>5.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p>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신기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신기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p>
310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p><b>제1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균</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p> <p>2. 위촉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균형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시민(전문개정. 2014.10.30)</p>
311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p><b>제23조(구성)</b> ①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읍·면·동 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명과 부위원장 (읍·면·동 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면·동 지역은 50명 이내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균형발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시민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312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1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1. 경기도의회 의원</p> <p>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p> <p>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p>
31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p><b>제9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1.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p> <p>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p>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4.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314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7조(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4.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31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316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2조(도시재생위원회)</b>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구성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운영은 영 제 10조 각 항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p> <p>④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⑤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도 직제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p>
3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	<p><b>제24조(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b> ① 법 제34조에 따른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도시재정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li> <li>2.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li> <li>3.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318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p><b>제8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b>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li> <li>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li> <li>3. 도지사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4. 사업협의회의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도지사는 총괄계획가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19	<p align="center"><b>(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b></p>	<p><b>제 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b> ①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부위원은 안전행정부 차관 중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토교통부 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1명, 도지사를 각각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⑩ 건설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심의한다.                      1. &lt;삭제 2012.01.05.&gt;                      2. 충남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lt;삭제 2012.01.05.&gt;                      4.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6.30.]</p>
320	<p align="center"><b>(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b></p>	<p><b>제 15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된다.</p>
321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p><b>제 1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li> <li>2.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li> <li>3.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li> <li>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li> </ol>
32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p><b>제 15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5-12-28&gt;</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업무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광역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lt;개정 2015-12-28&gt;</li> <li>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li> <li>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동간사를 두고, 공동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으로 한다.</li> </ol>
323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p><b>제 1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부서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라남도회의회장이 추천하는 도의원</li> <li>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li> <li>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24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p><b>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문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325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p><b>제11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문화예술, 전시, 홍보, 교육,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32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p><b>제11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li> <li>2. 제1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li> <li>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li> <li>4. 시 소속 실장·국장·본부장</li> <li>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에는 제2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p>
327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p><b>제22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2014.8.13., 2016.7.8.&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4.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5.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6.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28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b>제 1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조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업주체의 임직원 4. 입주자 대표 5.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6.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29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b>제 18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주택업무 담당국장과 입주자(임대차인) 대표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30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b>제 15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시·군 담당 공무원 3. 입주자 대표 4. 사업주체 5.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6. 주거복지, 의료복지, 일자리 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31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b>제25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2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b>제3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개정 2011.7.1.> 3. 관계 공무원
333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b>제4조(구성)</b>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업무소관국장

번호	구분	조례규정
		나. 업무소관과장 2. 위촉직 가. 기업인, 학계,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3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b>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b>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6.>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단체 대표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35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11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2. 담당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3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기관, 지역시민단체 관계자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관련업무 과장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336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6조(학교피해지원위원회)</b> ①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지역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의 지원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li> </ol>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관련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p>
337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p><b>제28조(자원순환협의회)</b> ① 시장은 자원순환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원순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순환 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li> <li>2.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li> <li>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 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li> <li>5. 폐기물 관련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자원순환 시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4. 재활용사업자</li> <li>5. 대학교수 등 자원순환 시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lt;개정 2016. 7. 13&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2. 25>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0>
338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b>제3조(구성 및 임기)</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3. 27>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환경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3. 27>
339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b>제2조(위원회 구성)</b> ①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 10. 31>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③ 분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40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b>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b>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341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b> 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li> <li>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환경산업체 임직원</li> <li>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342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p><b>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b>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li> <li>3. 제18조에 따른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li> <li>2. 학계 및 연구기관 환경산업 관련 전문가</li> <li>3. 환경산업체 임직원</li> <li>4. 그 밖에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343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p><b>제7조(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p> <p>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하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3.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인천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344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p><b>제25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345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 Ⅲ. 위원회 개선과제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p><b>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b>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교육감</li> <li>2. 수도방위사령관</li> <li>3. 서울지방경찰청장</li> <li>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li> <li>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li> <li>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li> <li>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li> </ol> <p>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1조(재난방송협의회)</b>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li> <li>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li> <li>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li> <li>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방송협의회 위원장은 시의 안전총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5.7.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li> <li>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li> <li>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li> <li>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⑤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p> <p>[전문개정 2015.5.14]</p> <p><b>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b>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li> <li>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li> <li>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li> <li>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li> <li>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방안마련</li> <li>6.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li> </ol> <p>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2부시장</li> <li>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③ 시의 안전총괄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lt;개정 2015.7.30.&gt;</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li> <li>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li> <li>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li> </ol> <p>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의 안전정책 및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한다.</p> <p>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li> <li>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li> </ol> <p>⑦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p> <p>⑧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p> <p>⑨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5.5.14]</p> <p><b>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b>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자치구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전문개정 2015.5.14]</p> <p><b>제23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b>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5.5.14]</p> <p><b>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b>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총괄본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lt;개정 2015.7.30.&gt;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li> <li>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li> <li>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시의 다른 실·본부·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전문개정 2015.5.14]</p> <p><b>제39조(재난통계)</b> ① 시장은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자치구·긴급구조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5.5.14]</p> <p><b>제41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b>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평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4]</p> <p><b>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b>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4]</p> <p><b>제44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b> ①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4]</p> <p><b>제48조(도시안전 기본계획)</b>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4]</p> <p><b>제5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b>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4]</p> <p><b>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b>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4]</p> <p><b>제53조(안전교육)</b> ①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4]</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b>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b>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4]</p>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p><b>제5조 (용도)</b>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lt;개정 2009.11.11&gt;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lt;개정 2011.10.27, 2013.5.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li> <li>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li> <li>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li> <li>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li> <li>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li> <li>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li> <li>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li> <li>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li> </ul> </li> <li>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li> <li>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li> <li>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li> </ul> </li> <li>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li> <li>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li> <li>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슬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입차</li> <li>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li> </ul> </li> <li>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li> <li>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li> <li>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li> </ul> </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p> <p>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p> <p>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p> <p><b>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9.11.11&gt;</p> <p>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11.11&gt;</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안전총괄본부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 &lt;개정 2007.12.26,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5.10.8&gt;</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2009.5.28, 2009.11.11, 2011.7.28, 2011.10.27, 2015.10.8&gt;</p> <p>1.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09.11.11, 2013.5.16&gt;</p> <p>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09.11.11, 2011.10.27&gt;</p> <p>[전문개정 2007.3.8]</p>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p><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b>제8조(위험도 평가관리반의 구성·운영 등)</b> ①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관리반의 반장은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③ 위험도 평가관리반에는 각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험도 평가관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의 총괄 지휘 2.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이 사전에 마련한 위험도 평가 시행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지진 발생 직후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설정 4.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험도 평가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수립 5.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험도 평가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조정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위험도 평가관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험도 평가관리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b>제4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 11. 2, 2014. 7. 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11. 11. 2, 2014. 7. 9> 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재난예방 교육·홍보 다. 재난대응대비훈련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재 및 장비 구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내시설의 설치                      사. 물놀이 등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구입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p> <p>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는 사항&lt;개정 2011. 11. 2, 2014. 7. 9&gt;                      3. 삭제&lt;2011. 11. 2&gt;                      4. 삭제&lt;2011. 11. 2&gt;                      5. 삭제&lt;2011. 11. 2&gt;</p> <p><b>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5. 1. 1, 2015. 5. 27&gt;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도로계획업무담당과장·재난대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1. 11. 2, 2015. 2. 25&gt;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6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4.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 그 밖에 기반체계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제3조의2(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7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p>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연재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8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5. 5. 27> 1.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2. 재난·방재 및 저수지·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b>제4조(기금계정의 설치)</b> 부산광역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5.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1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b>제3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2.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3.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5.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6.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b>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b> [제목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위하여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계획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li> <li>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li> <li>3. 기금의 결산보고서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li> <li>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p> <p>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장, 물관리업무담당 부서장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li> <li>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li> <li>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li> </ol> <p>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p> <p>⑦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을 서기로 둔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p>
12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p><b>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b>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b>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li> <li>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b>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b>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p> <p>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2. 제501보병부대 부여단장  3.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  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amp;#8231;본부장  5.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부기관장  6. 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위원회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b>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b>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상시 위해요소 및 재해취약시설 모니터링&amp;#8231;제보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시장이 총괄한다.</p> <p>⑤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 및 민간단체의 대구지역의 대표  2. 재난안전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 업무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⑥ 민관협력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p> <p><b>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b>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구&amp;#8231;군 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27조(자문단의 구성)</b>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b>제37조(지원기준 등)</b> 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제1호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60퍼센트, 구·군비 40퍼센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본조신설 2016.7.11.]</p>
13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p><b>제4조(지원대상)</b>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3. 세입자 보조</p> <p>② 구·군에서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5조(지원기준)</b>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p> <p>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p> <p>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p> <p>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p>
14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p><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p> <p>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p> <p>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p> <p>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p> <p>5. 시장 및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p> <p>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p>
15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b>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p> <p>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p> <p>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성한다.</p> <p>1. 별표의 관계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p> <p>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p> <p>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6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p><b>제3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li> <li>2.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li> <li>3.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li> <li>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li>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li> </ol>
17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p><b>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b></p> <p>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li> <li>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li> <li>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li> </ol> <p>② 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선정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18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p><b>제5조 (기금의 용도)</b>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74조 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 사업</li> <li>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li> <li>다.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li> <li>라.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li> <li>마.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li> <li>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li> <li>사.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li> <li>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li> <li>자. 재난·재해관련 장비·자재의 구입 및 임차</li> <li>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ul> </li> <li>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b>제10조 (위원회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2-01-02&gt;</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08-03&gt;</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다. &lt;개정 2012-01-02&gt;</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08-03&gt;</p>
19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p><b>제5조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0-01-18&gt;&lt;개정 2015-09-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행정부시장 [전문개정 2010-01-18]</li> <li>2. 재난안전본부장</li> <li>3. 인천지방경찰청장</li> <li>4. 시지역 관할 군부대장</li> <li>5. 시 교육감</li> <li>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li> <li>7.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8.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련 실국장</li> <li>9.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② 위원 및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09-30&gt;</p> <p><b>제17조 (설치 및 기능)</b>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대책본부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li> <li>2.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li> <li>3.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li> <li>4. 피해상황의 조사</li> <li>5.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li> <li>6. 재난사항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li> <li>7.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p> <p>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p> <p>10.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lt;개정 2010-01-18&gt;</p> <p><b>제23조 (협조체제 구축 등)</b> ①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통신망 연계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09-30&gt;</p> <p>②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lt;개정 2015-09-30&gt;</p> <p>③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lt;삭제 2015-09-30&gt;&lt;삭제 2015-09-30&gt;&lt;이동 2015-09-30&gt;</p>
20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p><b>제4조(기금의 용도)</b> 재해구호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위로금과 생계보조금</li> <li>2. 생계구호</li> <li>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지급</li> <li>4. 비축물자의 구입</li> <li>5. 주택구호(응급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li> <li>6.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li> <li>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li> </ol> <p><b>제5조(구호기준)</b>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5-07-27&gt;</p>
21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과장급 이상)</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리·수문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li> <li>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2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4조(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 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li> <li>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li> <li>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23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4조(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등)</b> ① 지역본부장은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관련 학회·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사전에 구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1 “지진피해조사단 편성기준”에 의한 관련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li> <li>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③ 조사단장은 지진피해조사 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진피해의 규모 및 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p>
24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p><b>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b> ①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p>
25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p><b>제4조(기금의 용도)</b>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5.12.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lt;개정 2015.12.28.&gt;</li> <li>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lt;개정 2015.12.28.&gt;</li> <li>3.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lt;개정 2015.12.28.&gt;</li> <li>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lt;개정 2015.12.28.&gt;</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 <개정 2015.12.28.>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개정 2015.12.28.>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및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개정 2015.12.28.> ② 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98.9.3>
26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b>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b> ①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성한다. 1. 별표 1의 관계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자 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27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공무원 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방재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28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 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번호	구분	조례규정
2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p><b>제5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li> <li>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및 응급복구</li> <li>다. 재난 복구 및 예방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li> <li>라. 안전문화 육성·지원 활동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li> <li>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ol> </li> <li>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는 사항</li> </ol> <p><b>제10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li> <li>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li> </ol>
30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p><b>제5조(기금의 운용·관리)</b> ①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금 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되,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③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lt;본조개정 2011.10.15&gt;</p> <p><b>제9조(기금의 회계관리)</b>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10.15&gt;</p>
31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p><b>제4조(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b> ① 시장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li> <li>4. 소년소녀가장가정 및 한부모가정 주택</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그 밖에 소방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2	(광주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b>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2015.7.1>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원(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33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b>제4조(지원)</b> 대전광역시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개선사업 2. 방범 장비·복장 구입 3. 그 밖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3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b>제3조(기금의 용도)</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사업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용 용자</p> <p>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p> <p>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전문개정 2015.12.31.]</p> <p><b>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35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3조(기능)</b>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li> <li>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등의 응급조치</li> <li>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li> <li>4.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 요청사항 지원</li> <li>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li> <li>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li> <li>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li> <li>8. 재난의 수습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li> <li>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b>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p> <p>② 현장상황관리관은 해당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등에 관한 현황</li> <li>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상황</li> <li>3. 지역주민 대피 상황</li> <li>4.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li> </ol> <p><b>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b>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p> <p>②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재난유형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부시장</li> <li>2. 시민안전실장 및 재난관리과장</li> <li>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li> <li>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li> <li>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li> <li>6.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li> <li>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p> <p>④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p> <p>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36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p><b>제3조(기금 관리·운용)</b>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lt;개정 1995.1.1&gt;</p> <p>②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6.18, 2001.10.12, 2006.12.29, 2008.8.8&gt;</p>
37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4.12.31., 2015.6.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ol>
38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p><b>제3조(우선설치 주택)</b>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하여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2.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li> </ol>
39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p><b>제3조(소방시설의 우선 설치)</b>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관내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40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p><b>제4조 (기금의 용도)</b>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lt;개정 2014.8.7., 2015.12.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li> <li>2.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li> <li>3.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li> <li>4.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li> <li>5.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구입 또는 임차(단, 제설차량 구입 제외)</li> <li>6.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li> <li>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장구 구입</li> <li>8.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li> <li>9.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li> <li>10.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li> <li>11.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li> <li>12.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구입</li> <li>13. 법 제3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방역초소 설치</li> <li>14.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li> <li>15. 그 밖에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2·1·12]</li> </ol> <p><b>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t;2010·4·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계획</li> <li>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li> <li>3. 기금의 결산</li> <li>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2007·12·17>
41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p><b>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b></p> <p><b>제3조(대책본부의 기능)</b>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li> <li>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li> <li>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li> <li>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li> <li>5.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군 대책본부”이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군 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 지원</li> <li>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li> <li>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li> <li>8.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li> <li>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b></p> <p><b>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b>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구·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p> <p>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p> <p>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li> <li>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li> <li>3. 지역주민 대피 및 구·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li> <li>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li> </ol> <p>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p><b>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b>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p> <p>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구·군비 50퍼센트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42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4조(구성)</b>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의 회 의장,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li> <li>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li> <li>3. 그 밖의 의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43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4.10.16., 2015.6.30., 2015.12.10.&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공무원</li> <li>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li> <li>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사무원이 간사가 된다. &lt;개정 2014.10.16&gt;</li> </ol>
44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4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b> ①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원인조사단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p> <p>② 조사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지진업무담당사무원으로 한다.</p> <p>③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p> <p>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가</li> <li>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li> </ol> <p>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45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p><b>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b>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p> <p>① 기금은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p> <p>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p> <p>③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4.17, 2007.12.17, 2010.5.13&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4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p><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li> <li>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5.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li> </ol>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p>
47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b>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원으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3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li> <li>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li> <li>3. 지역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li> </ol> <p>②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위험도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구역별 또는 시설물 피해 분야별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의 수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 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하며 평가단장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 9. 30.)</p> <p>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이 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9. 30.)</p>
48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4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b>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별표에 따른 시 및 인근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중 성별균형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p> <p>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5. 9. 30.)</p> <p>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의 관계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li> <li>2.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li> </ol> <p>④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역건, 피해규모 및 피해시설 등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p>

번호	구분	조례규정
49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p><b>제3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li> <li>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lt;개정 2015.04.30., 2015.10.13.&gt;</li> <li>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li> <li>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li> <li>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li> <li>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li> <li>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li> <li>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li>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li> </ol> </li> <li>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li> <li>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li> <li>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li> <li>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li> </ol> </li> <li>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li> <li>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li> </ol> </li> <li>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li> <li>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li> <li>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li> </ol> </li> <li>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li> <li>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li> <li>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li> </ol> </li> <li>7. 법 제 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lt;개정 2015.04.30.&gt;</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2.12.28.]</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lt;개정 2012.12.28.&gt;[전문개정 2011.12.26.]</p> <p><b>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b> &lt;개정 2009.3.12.&gt;)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lt;개정 2009.3.12.&gt;</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3.12.] &lt;개정 2012.4.6.&gt;</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amp;#8231;국장이 된다. [신설 2009.3.12.] &lt;개정 2011.4.7., 2014.9.24., 2015.10.13.&gt;</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lt;개정 2011.12.26.&gt;</p> <p>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p> <p>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lt;개정 2012.4.6.&gt;</p> <p>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신설 2012.4.6.]</p>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1.12.26.&gt;</p> <p>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2.26.]</p> <p>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12.26.]</p> <p>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3.12.] [단서신설 2012.12.28]</p> <p>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9.3.12.] &lt;개정 2012.12.28.&gt;</p> <p>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p> <p>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p> <p>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p> <p>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10.13.]</p> <p>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번호	구분	조례규정
50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	<p><b>제6조(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구성)</b>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 및 개인</li> <li>2. 재난·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li> <li>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5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p><b>제3조(도대책본부의 기능)</b>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li> <li>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li> <li>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li> <li>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li> <li>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 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li> <li>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li> <li>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li> <li>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li> <li>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4조(도대책본부 구성 등)</b>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li> <li>2. 차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li> <li>3. 총괄지원관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lt;개정 2015.07.17.&gt;</li> <li>4.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본부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도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전문개정 2015.07.17.]</li> <li>5. 수습복구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 복구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신설 2015.07.17.]</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6. 사회재난담당관은 안전기획과장이 되고, 자연재난담당관은 재난대책과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며, 수습복구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어 수습복구관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5.07.17.]</p> <p>7. 실무반은 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은 안전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은 재난대책과에서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5.07.17.]</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화재, 조류, 조수에 대한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당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5.07.17.]</p> <p><b>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b>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b>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b>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p> <p>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100분의 50, 시·군비 100분의 50으로 한다.</p>
52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p><b>제2조(업무)</b>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 및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안전교육</li> <li>2. 재난 및 방재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전시 및 제공</li> <li>3. 재난 및 방재에 관한 지식의 개발 및 보급</li> <li>4. 방재에 관한 상담</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전시실, 방재 도서실, 연수실 및 부속설비의 이용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53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4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b>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미리 별표의 지진피해와 관련한 분야별 학회 또는 협회 등에 소속된 50명 이하의 전문가들을 조사단으로 위촉하여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③ 조사단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피해규모·현지역건·피해시설 등을 고려하여 미리 위촉한 조사단원 중에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정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b>제3조(기금용도)</b>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개정 2015.10.13.>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개정 2012.5.11.>
55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b>제7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29., 2012.7.13., 2015.11.6.>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도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4.4.>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56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b>제3조(도 대책본부의 기능)</b>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 재난 상황관리,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p> <p>3. 재난 피해상황 조사·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p> <p>4.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요구</p> <p>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 본부장”) 지휘 및 수습지원</p> <p>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발령</p> <p>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p> <p>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한 업무</p> <p>9.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4조 (도 대책본부 구성 등)</b>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p> <p>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p> <p>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p> <p>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본부의 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단, 재난안전실장이 통제관이 되는 재난유형의 경우 총괄조정관이 통제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p> <p>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p> <p>6. 실무반은 도 소속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수습 업무를 수행한다.</p> <p>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도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별 재난수습업무는 별표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p> <p><b>제5조(도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b> ① 도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준비단계 : 종합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종합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2. 비상단계</p> <p>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3과 같다.</p> <p>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6과 같다.</p> <p>라. 도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는 별표7과 같다.</p> <p>② 비상단계 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6조의 상황판단 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p> <p>④ 도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57	(강원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lt;개정 2015.1.2, 2015. 7. 10&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58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p><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li> <li>라.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ul> </li> <li>2.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li> </ol> <p>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59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4조(강원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b> ①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 및 강원도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난 결정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반환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지역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대변인, 환동해본부장(소관업무의 재난에 한한다)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3.7.26, 2015.1.2&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재난발생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그 밖에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0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b> ① 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별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편성 기준의 관계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 된 전문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61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4조(평가지원단의 구성)</b> ① 평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단장은 강원도 자연재난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5. 7. 10> 2. 평가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3. 평가지원단원은 건축물, 도로, 철도, 댐, 농업기반시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한다. ② 평가지원단은 시·군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의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6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b>제4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6, 2015. 1. 1>[전문개정 2012. 1. 13] <b>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3, 2013. 7. 26> ③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2.11, 2012. 12. 28, 2013. 6. 28, 2015. 1. 1, 2015. 3. 27, 2015. 10. 2>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2, 2008. 7. 1, 2011. 2. 11, 2013. 7. 26>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⑤위촉직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6. 30><개정 2015. 1. 1>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2.11, 2015. 1. 1, 2015. 3. 27>
63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3조(기능)</b>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b>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b>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b>제17조(구성·운영)</b> 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의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④ 재난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4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b>제3조(센터의 기능)</b>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2.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3.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4.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구축과 분석 5.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6. 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7. 그 밖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5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b>제3조(기금의 용도)</b>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 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p> <p>자. 「항만법」 제2조제5호 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 및 호안</p> <p>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방파제·방사제·파제</p> <p>카.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p> <p>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p> <p>파.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p> <p>3. 재난피해시설(충청남도 및 시·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p> <p>가. 수해·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p> <p>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및 대책사업</p> <p>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p> <p>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p> <p>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p> <p>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p> <p>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p> <p>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p> <p>다. 항공사진 등 공간영상 자료 수집</p> <p>라. 그 밖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연구</p> <p>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lt;신설 2013.6.10.&gt;</p> <p><b>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b>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2.01.05&gt;</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3.6.10.&gt;</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01.05&gt;</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해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66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기능)</b>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li> <li>2.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li> <li>3.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li> <li>4.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li> </ol>
67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lt;2015. 10. 2&gt;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또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68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b>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2. 도지사, 시장·군수가 현지역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li> </ol> <p>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b>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용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kg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li> <li>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li> </ol>
69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5조(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b>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의 평가단과 인근 시·군 평가단의 지원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지진재난대책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한다. &lt;개정 2015. 10. 2&gt;          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은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평가단,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나 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5. 10. 2&gt;          ④ 평가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지진발생 시 정보수집 2. 충청북도 내 시·군 및 인근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평가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군 및 시설물에 대한 평가 지원 4. 그 밖에 충청북도 내 시·군 평가단 지원에 관한 업무
70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로써 20개 이내로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충청남도의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71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b>제4조(기금의 용도)</b> ①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정산) 4. 비축물자 및 보관창고 설치 5.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의연금품 조작경비 ② 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72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2조(구성)</b> ①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수문학 또는 토질공학 교수 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과장 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73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p><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li> <li>5.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li> </ol> <p>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p>
7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p><b>제3조(대책본부의 기능)</b>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li> <li>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li> <li>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li> <li>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의 요구</li> <li>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li> <li>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li> <li>7.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li> <li>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b>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b> ①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p> <p>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정한다.</p> <p><b>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b>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소방본부장 및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서의 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b>제32조(구성 등)</b>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0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 3. 정비사업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6	(세종특별자치시)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b>제5조(기능)</b>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자의 지원요청사항 접수 및 상담, 주관부서 통보 2.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 3. 그 밖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7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b>제4조(기금의 용도)</b>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1. 11>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lt;개정 2011. 11. 11&gt;</p> <p>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다음 각 목의 보수·보강사업 &lt;개정 2011. 11. 11&gt;</p> <p>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p> <p>나.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p> <p>라.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p> <p>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p> <p>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p> <p>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p> <p>아. 「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p> <p>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p> <p>차.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p> <p>카.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lt;개정 2016. 1. 29&gt;</p> <p>3.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대차비용 용자 &lt;개정 2011. 11. 11&gt;</p> <p>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lt;개정 2011. 11. 11&gt;</p> <p>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p> <p>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p> <p>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p> <p>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lt;개정 2011. 11. 11&gt;</p> <p>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lt;개정 2011. 11. 11&gt;</p> <p>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p> <p>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p> <p>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p> <p>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lt;개정 2011. 11. 11&gt;</p> <p>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lt;개정 2011. 11. 11&gt;</p> <p><b>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b>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1. 11. 11&gt;</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실장이 된다. &lt;개정 2007. 2. 2, 2011. 11. 11, 2015. 12. 28&gt;</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소속 실·국·과장과 전라북도의회의원,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11. 11, 2016. 1. 29&gt;</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lt;개정 2007. 2. 2, 2010. 7. 30, 2011. 11. 11, 2015. 7. 1&gt;</p>
78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p><b>제7조(구성)</b>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부지사</li> <li>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li> <li>3. 전북지방경찰청장</li> <li>4. 전라북도지역 관할사단장</li> <li>5. 전라북도교육감</li> <li>6. 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li> <li>7. 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li> </ol> <p>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 11조에 따른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관이 된다.</p> <p><b>제20조(구성)</b>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부지사</li> <li>2.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li> <li>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li> <li>④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li> <li>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p> <p>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p> <p>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p> <p>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p> <p>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p> <p><b>제33조(도 대책본부의 기능)</b>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p> <p>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p> <p>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p> <p>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p> <p>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p> <p>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p> <p>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p> <p>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p> <p>9. 그 밖에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b>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b>제51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b>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재난상황 발생 시 현황 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p> <p>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p> <p>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p> <p>4. 시·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p> <p>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시·군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p> <p>6.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p> <p>7. 시·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p> <p>8.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p> <p><b>제55조(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등)</b> ① 도지사는 재난의 예방·관리 및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지역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지수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b>제57조(재난통계)</b> ① 도지사는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군, 긴급구조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p> <p><b>제60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b> 도지사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및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등</li> <li>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li> <li>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li> <li>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li> <li>5. 재난통신요원 양성교육 및 훈련</li> <li>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li> <li>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li> <li>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ol>
79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p><b>제4조(기금의 용도)</b> 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5. 10.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lt;개정 2015. 10. 30&gt;</li> <li>2.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lt;개정 2015. 10. 30&gt;</li> <li>3.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lt;개정 2015. 10. 30&gt;</li> </ol> <p>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국가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7. 1, 2015. 10. 30&gt;</p>
80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3조(전라북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b> ① 전라북도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난 결정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반환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지역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도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축수산물국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 경제산업국장과 지역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요청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b>제18조(수령권자)</b> 지역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하 “수령권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령권자가 「민법」이 정하는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 본인</li> <li>2. 피해자가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의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 순으로 하고, 최근친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배우자</li> <li>나. 피해자의 직계비속</li> <li>다. 피해자의 직계존속</li> <li>라. 피해자와 사실상의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li> </ol> </li> </ol>
81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p><b>제2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b>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정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3.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li> <li>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5.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이다 된다.</li> <li>6.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li> <li>7.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i> </ol>
82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p><b>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lt;개정 2014. 12. 26&gt;</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11. 11, 2014. 12. 26&gt;</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정책과장, 예산과장 등 관련부서 과장, 3명 이내의 도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gt;</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14. 12. 26&gt;</p>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t;개정 2011. 11. 11&gt;</p> <p>1. 특별회계의 운용</p> <p>가. 사업순위 결정과 용자배분 &lt;개정 2011. 11. 11&gt;</p> <p>나. 제14조제2항의 용도의 사용여부 &lt;개정 2011. 11. 11&gt;</p> <p>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lt;개정 2011. 11. 11&gt;</p> <p>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p> <p>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p> <p>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규모 등 &lt;개정 2011. 11. 11&gt;</p>
83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p><b>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b></p> <p>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p> <p>④ 위원은 전라남도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4.12.26)</p> <p>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12.26)</p> <p>2.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12.26)</p> <p>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1. 13)</p>
84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p><b>제2장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b></p> <p><b>제3조(기능)</b>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p> <p>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p> <p>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p> <p>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지원</p> <p>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p> <p>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p> <p>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p> <p>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4조(구성 등)</b>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5.12.31.)</p> <p>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도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p> <p>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p> <p>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의 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p> <p>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도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p> <p>5. 총괄지원관은 도민안전실장이 되며, 도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12.31.)</p> <p>6. 지원담당관은 사회재난과장이 되며, 총괄지원관을 보좌한다.(개정 2015.12.31.)</p> <p>7.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본부장이 단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신설 2015.12.31.)</p> <p>8. 실무반은 도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2.31.)</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 2 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5.12.31.)</p> <p><b>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b> ① 도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p> <p>③ 도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 50퍼센트씩으로 한다.</p>
85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p><b>제4조(기금용도)</b>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p> <p>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p> <p>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p>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5.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6.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6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b>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4.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개정 2016.10.27.) <b>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b> 법 제8조제1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0.27.)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용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개정 2016.10.27.)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6.10.27.)
87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b>제2조(지원사업)</b>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 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관련 지침 개발·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번호	구분	조례규정
88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p><b>제6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lt;개정 '11.11.0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li> <li>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li> <li>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li> <li>4. 재난관련 장비 구입</li> <li>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lt;개정'11.11.07&gt;</li> <li>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lt;개정 '11.11.07&gt;</li> <li>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lt;개정 '11.11.07&gt;</li> <li>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lt;개정'11.11.07&gt;</li> <li>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lt;개정'11.11.07&gt;</li> <li>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lt;개정'11.11.07&gt;</li> <li>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lt;개정'11.11.07&gt;</li> <li>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lt;개정'11.11.07&gt;</li> <li>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lt;개정'11.11.07&gt;</li> <li>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lt;개정'11.11.07&gt;</li> <li>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lt;개정'11.11.07&gt;</li> <li>10.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lt;신설'13.5.30&gt;</li> </ol> <p><b>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된다 &lt;개정'11.11.07, '16.05.26.&gt;</li> <li>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lt;개정'11.11.07&gt;</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lt;개정'11.11.07&gt;</li> <li>2.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lt;개정'11.11.7,'13. 5.30&gt;</li> <li>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11.11.07&gt;</li> <li>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대응과 재난대응담당사무관이 된다. &lt;개정'06.12.28, '11.11.07, '16.05.26.&gt;</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⑦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lt;신설 '16.05.26.&gt;</p>
89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b>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li> <li>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li> <li>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li> <li>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li> <li>5. 시·군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지원</li> <li>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li> <li>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li> <li>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li> <li>9. 그 밖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b>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p>
90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p><b>제4조(기금의 용도)</b> ①이 기금은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 및 복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lt;개정 '99.8.16, '06.9.25, '11.1.6&gt;</p> <p>② 재해구호 광업협력체제 구축을위해 타시도 재해발생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한 시도당 지원범위는 2천만원이내로 한다. &lt;개정 '06.9.25&gt;</p>
91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p><b>제3조(주택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b> ① 도지사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이 거주하는 주택</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9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p><b>제5조(기금의 용도)</b>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다.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라.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사.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lt;신설 2012.12.27&gt;</p> <p>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lt;전문개정 2011.11.10&gt;</p> <p><b>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6.08.24, 2011.11.10&gt;</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된다. &lt;개정 2007.6.28, 2009.8.1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4.8.7, 2015.7.2&gt;</p> <p>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담당관,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건축과장, 구조구급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lt;개정 2006.8.24, 2008.1.10, 2008.7.3, 2011.3.24, 2011.11.10, 2011.12.29, 2012.12.27, 2013.1.31, 2013.8.8, 2014.8.7, 2014.10.10, 2015.7.2&gt;</p> <p>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06.8.24, 2011.11.10, 2012.12.27, 2014.10.10&gt;</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대응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lt;신설 2006.8.24&gt; &lt;개정 2007.6.28, 2009.8.13, 2011.3.24, 2011.11.10, 2011.12.29, 2013.8.8, 2014.8.7, 2015.7.2&gt;</p> <p>⑦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11.10&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93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p><b>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기능)</b> 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b>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b>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p> <p>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p>
94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민방위 행정에 대한 도민의 협조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민방위 대원 중 도내 각 시·군 주부민방위기동대로 편성된 사람들의 대표자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p>
95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p><b>제3조(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b> 도지사는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li> <li>3. 소년소녀가장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li> <li>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li> </ol>
96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p><b>제4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p> <p>&lt;개정 2011.10.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p> <p>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p> <p>4. 재난관련 장비 구입</p> <p>5.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p> <p>6.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p> <p>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복구</p> <p>8.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임차</p> <p>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p> <p>10.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p> <p>11.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p> <p>12.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보수·보강</p> <p>13.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b>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b> 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2009.3.18, 2011.10.12&gt;</p> <p>④ 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9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p><b>제4조(구성)</b>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4.8.13., 2015.10.6., 2016.7.8.&gt;</p> <p>1. 제주자치도의 안전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 소방본부장, 환경보건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p> <p>2.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b>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b> ①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15.10.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li> <li>3.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li> <li>4. 2개 행정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li> <li>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담당관·과장과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5.10.6.&gt;</p> <p>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신설 2015.10.6.&gt;</p> <p>④ 실무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lt;신설 2015.10.6.&gt;</p> <p>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회의,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lt;개정 2015.10.5.&gt;</p> <p><b>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b>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li> <li>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li> <li>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지사가 총괄한다.</p> <p>⑤ 제주자치도의 안전관리실장·소방안전본부장·도시건설국장은 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2014.8.13., 2015.10.6., 2016.7.8.&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 및 민간단체의 제주자치도 지역의 대표</p> <p>2. 기업에서 재난안전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 업무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p> <p>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p> <p>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⑥ 협력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사무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lt;개정 2015.10.6.&gt;</p> <p><b>제24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b> ① 도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관계 기관,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도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 행정시대책본부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p> <p><b>제32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등)</b>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li> <li>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li> <li>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li> <li>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li> <li>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li> <li>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li> <li>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p> <p>⑤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0.6.]</p> <p><b>제51조(구성)</b>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4.12.4.&gt;</p> <p>②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014.1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 토목, 전기·전자, 정보통신, 가스, 기계, 설비, 환경, 에너지, 교통, 관광, 산업안전, 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li> <li>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li> <li>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li> <li>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b>제61조의2(안전문화활동 지원)</b> 도지사는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사업</li> <li>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li> <li>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li> <li>4. 안전문화운동 관련 단체의 역량강화[본조신설 2015.10.6.]</li> </ol>
98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p><b>제4조(기금의 용도)</b> 기금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lt;개정 2009.3.18&gt;</p> <p><b>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b>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은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2009.3.18&gt;</p> <p>④ 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99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p><b>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b>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 보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li> <li>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li> <li>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본조신설 2015.10.6.][중건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1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4조(기능)</b>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li> <li>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li> <li>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b>제24조(사용료의 감면)</b>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li> <li>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6.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li> <li>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li> </ol> <p>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li> <li>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li> </ol>
10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p><b>제12조(감사단의 구성 등)</b> ① 감사단은 5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단 내에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li> <li>2.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p> <p>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반에 관리감사 전담부서 공무원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군수는 시장의 요청</p>

번호	구분	조례규정
		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0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p><b>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b>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업무 관련 국장</li> <li>2. 국민기초생활 업무 관련 국장</li> <li>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li> <li>4. 건축사 등으로서 건축구조 및 시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5. 주택관리사로서 주택관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6. 각종 분쟁 및 중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학계 및 법조계 인사</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10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p><b>제6조(감사반의 구성·운영)</b>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p> <p>②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li> <li>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li> <li>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p>
10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p><b>제5조(감사단의 구성 등)</b> ① 감사단은 10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담당팀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05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b>제10조(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b>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당연직으로 한다) 2. 전라북도의회 의장 추천하는 3인 3.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4. 전라북도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3인 5. 공동주택분야 업무 경력이 있거나 종사하는 자 6.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10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5조(구성)</b> ① 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9.30) 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해당위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9.3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9.30)
10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b>제1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번호	구분	조례규정
	등에 관한 조례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9. 23>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8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b>제51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 2015.12.28.> 1.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4.1.1.> 3.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1.>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0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b>제18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15.6.1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번호	구분	조례규정
110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p><b>제20조의2(소위원회)</b>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13. 11. 0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도시녹화사업계획</li> <li>2.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경관·디자인사업계획</li> <li>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0.11.]</p>
111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p><b>제30조(위원회 운영)</b> ①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자문단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5.8.14.&gt;</p> <p>④ 그 밖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112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p><b>제1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광고물 및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lt;개정 2011.10.15., 2014.9.15.&gt;</p> <p>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113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p><b>제9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li> <li>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li> <li>3.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li> <li>4.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11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p>

번호	구분	조례규정
	운영에 관한 조례	<p>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장</li> <li>2.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li> </ol>
11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p><b>제3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li> <li>4.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건축사</li> <li>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116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p><b>제11조 (심의위원회)</b>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숲 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숲 교육 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li> <li>2. 숲 교육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숲 교육 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li> </ol>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녹색자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산림소득과장, 도교육청 책임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숲 교육에 관한 전문가</li> <li>2. 대학교수 등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숲 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117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8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질공원 관할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5. 지질공원 소재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6. 기타 행정·교육·언론 분야 전문가
118	(광주광역시) 환경공단 설치 조례	<b>제12조(이사회)</b>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15., 2014.6.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4.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119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b>제12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b> 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후변화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후환경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7.30., 2015.10.8.> 1. 기후환경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2.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0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b>제12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b> 본 조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1-10-24] 1.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21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b>제6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05.17.] 1. 경기도의회 의원 2. 물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물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물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122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6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경상북도 물산업 관련 국장 및 투자유치 관련 국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물산업 관련 분야, 산업 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연구원 4. 그밖에 물산업 관련 기업 대표자 및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 ③ 협회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 관련 과장으로 한다.
123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b>제7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제주자치도 물산업 관련 국장 및 수자원 관련 본부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물산업 및 수자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물산업 관련 기업 대표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124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1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물 재이용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5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b>제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회의의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6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후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푸른도시국장·도시계획국장·물순환안전국장 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27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8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6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 <개정 2014.12.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129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7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인천광역시청 소속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130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b>제6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개정 2014.12.22.> 2. 대구광역시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임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31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b>제8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으로 한다.
132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b>제7조(이사회)</b>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li> <li>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④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li> <li>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li> <li>⑥ 이사회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li> </ul>
133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b>제16조(구성)</b>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관리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관리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4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6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물산업 관련 국장 및 투자유치 관련 국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물산업 관련 분야, 산업 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연구원 4. 그밖에 물산업 관련 기업 대표자 및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 ③ 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 관련 과장으로 한다.
135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b>제7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제주자치도 물산업 관련 국장 및 수자원 관련 본부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물산업 및 수자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물산업 관련 기업 대표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36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물 재이용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li> <li>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137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b> ① 시의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3. 물의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5.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 : 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하수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li> <li>2. 위촉직 위원 : 물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li> </ol> <p>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138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p><b>제1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4.9.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2. 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li> <li>3. 경기도의회 의원</li> </ol>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④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9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b>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부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담당국장, 도의회의원 및 수질·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0.4., 2015.4.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10.>
140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b>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도의회의원 및 수질·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41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b>제10조(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환경정책과장·수질보전하천과장·공원녹지과장·개발계획과장·건축계획과장·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장 <개정 2011-10-24> 3. 수질·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2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b>제10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b>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④ 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인공조명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43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b>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



번호	구분	조례규정
	관한 조례	<p>주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부서 공무원, 옥외조명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으로 한다</p>
144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p><b>제7조(빛공해 방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색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lt;개정 2014.9.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li>3.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자로 한다</p>
14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p><b>제8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li> <li>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ol>
146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p><b>제 1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li> <li>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빛공해·야간경관·LED·미디어파사드·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4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b>제6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48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b>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49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b>제7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150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b>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b>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인공조명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1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b>제11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7. 30, 2015. 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석면 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b>제8조(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 구성)</b> ① 법 제20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3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7.>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시민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관계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번호	구분	조례규정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54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b>제2조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상수도시설 운영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55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b>제8조(에너지위원회)</b> ①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7.26.>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29., 2012.7.13.> 2. 위원은 당연직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1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6.> 3. 위원은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및 강원도에 지역본부를 둔 공사·공단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7.26., 2016.7.8.> 4. 당연직위원은 에너지·환경·교통·청사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2005. 11. 4, 2012. 7. 13, 2015. 7. 10>
156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b>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 경기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57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b>제10조(구성 및 임기)</b> <개정 2009.08.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3.>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8.13.> 1. 도의회 의원 <개정 2009.08.13.> 2. 에너지 관련 학계, 전문가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개정 2009.08.13.> 3. 에너지 관련 담당공무원 <개정 2009.08.13.>

번호	구분	조례규정
		<p>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t;개정 2009.08.13.&gt;</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단, 공무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09.08.13.&gt;</p>
15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p><b>제5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b>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li> <li>3. 대학에서 건축, 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0.30)</li> </ol>
15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p><b>제5조(구성)</b>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lt;개정 2007.5.29., 2009.11.11., 2011.7.28., 2011.12.29., 2012.11.1., 2013.5.16., 2014.12.11., 2015.10.8., 2016.5.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li> <li>2. 시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li> <li>3. 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li> <li>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li> <li>5.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li> <li>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li> </ol> <p>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lt;개정 2009.11.11., 2012.11.1., 2013.5.16., 2015.10.8., 2016.5.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구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6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b>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b>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 1>
16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b>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b>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구·군 건축위원회(이하 “구·군 위원회”라 하며, 시 위원회와 구·군 위원회를 총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위원회는 시장이, 구·군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방재·범죄예방·법률·한옥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⑦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b>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li> <li>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li> <li>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li> <li>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li> </ol>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p>
163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lt;개정 2007-07-30, 2009-05-04, 2016-02-22&gt;</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09-10-05&gt; &lt;개정 2014-12-15&gt; &lt;개정 2016-02-22&gt;</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2007-07-30&gt;</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10-05&gt;</p> <p>⑤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여성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의 비율 제한을 위해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 &lt;개정 2016-0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li> <li>2. 소속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li> </ol> <p>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02-22&gt;</p>
16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p><b>제11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b> &lt;신설 2016-02-22&gt;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16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b>제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150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5.10.1., 2016.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구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015.10.1.> 1. 도시계획 및 교통, 건축 관계 공무원 <신설 2015.10.1.>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신설 2015.10.1.> 가. 건축계획(설계포함) 분야 나. 건축구조 분야 다. 건축시공 분야 라. 건축설비 분야 마. 건축방재 분야 바.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공기질분야 포함) 사. 건축물 경관(景觀)·디자인·조형예술 분야(공간환경 분야 포함) 아. 토목·조경 분야 자.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차.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카. 법률 분야 타.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분야 파. 사회·경제·범죄예방 분야 하. 교육 분야 <신설 2015.12.28.> 거. 그 밖의 분야 [중전 하목에서 이동, 2015.12.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3.4.1.>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16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p><b>제5조(구성 등)</b>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등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li> <li>2.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li> <li>3.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 소방본부 방호구조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4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li> <li>4.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li> <li>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등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li> </ol> <p>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③ 위원회 심의등의 대상 중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공동 심의 대상이 될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167	(경기도) 건축 조례	<p><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법률·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p> <p>④ 위원 중 도가 설치한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이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위촉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렴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168	(강원도) 건축 조례	<p><b>제18조(조직)</b> ①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lt;개정 2007. 4. 6, 2009. 12. 31, 2013. 9. 27, 2015. 6. 5&gt;</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09. 12. 31, 2015. 6. 5&gt;</p> <p>③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교육법무과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2001.3.3, 2005. 3. 5 2007.4.6., 2009.12.31., 2012.7.13., 2015.1.2., 2015. 6.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lt;신설 2015. 6. 5&gt;</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lt;신설 2015. 6. 5&gt;</li> <li>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lt;신설 2015. 6. 5&gt;</li> <li>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lt;신설 2015. 6. 5&gt;</li> <li>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하는 사람&lt;신설 2015. 6. 5&gt;</li> <li>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lt;신설 2015. 6. 5&gt;</li> </ol>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lt;개정 2007.4.6., 2009.12.31.&gt;[본조신설 97·8·9]&lt;개정 2015. 6. 5&gt;</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lt;신설 2015. 6. 5&gt;</p>
169	(전라북도) 건축 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3. 8. 9&gt;</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13. 8. 9&gt;</p> <p>③ 위원은 전라북도의 관계공무원,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의 경우에는 특성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lt;개정 2015. 12.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경관, 공간 환경, 사회,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li> <li>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하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2013. 8. 9>
170	(전라남도) 건축 조례	<b>제5조(조직)</b>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후단 신설 2015.7.2)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청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축계획 분야 나. 건축구조 분야 다. 건축시공 분야 라. 건축설비 분야 마. 건축방재 분야 바.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공기질 분야를 포함한다)(개정 2015.7.2) 사.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아. 디자인·조형예술 분야 자. 토목·조경 분야 차.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카.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타. 범죄예방 분야(신설 2015.7.2) 파. 여성분야(신설 2015.7.2)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청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2)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번호	구분	조례규정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제2항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도외의 현업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위촉하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예외적으로 도내의 현업종사자의 위촉을 허용한다.
171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p><b>제 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b>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li> <li>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li> <li>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li> <li>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3. 경관사업시행사</li> <li>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li> <li>5.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p> <p>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⑩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172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p><b>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p> <p>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p> <p>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②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관위원회 설치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p> <p>2.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p> <p>3.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173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p><b>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b>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p> <p>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p> <p>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3. 경관 관련 전문가</p> <p>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p> <p>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원이 된다.</p> <p>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174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p><b>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b>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17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p><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b>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의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⑥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17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p><b>제2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li> <li>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li> <li>4.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li> <li>5.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li> <li>6.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li> <li>7.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li> </ol> <p>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177	(경기도) 경관 조례	<p><b>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b>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li> <li>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li> <li>3. 경관 관련 전문가</li> <li>4. 경관사업자</li> <li>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li> <li>6.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의원</li> </ol> <p>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p> <p>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7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63조의2(도시계획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b> 시장은 도시계획의 선도적 정책 발굴 및 도시관리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정책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정책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정책자문단의 위원은 도시설계·건축·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와 문화·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4.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5. 정책자문단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회피, 수당 등은 제5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1>
179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b>제47조의2(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1. 시의회 의원 가.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 나.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4·6·30]



번호	구분	조례규정
180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p><b>제50조(분과위원회)</b>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04.12.31, 2006.2.16, 2007.7.12, 2009.11.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분과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li> <li>나. 삭제 &lt;2014.6.30&gt;</li> </ol> </li> <li>2. 제2분과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li> <li>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li> </ol> </li> <li>3. 삭제 &lt;2004.12.31&gt;</li> </ol>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lt;개정 2004. 12. 31, 2009.11. 5, 2010.12. 31&gt;</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위원장이 불참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신설 2004.12.31&gt;</p>
181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p><b>제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8.7.4., 2010.3.18.&gt;</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lt;개정 2008.7.4.&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7.5.7., 2008.7.4., 2013.8.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8.5.]</li> <li>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lt;개정 2005.10.31., 2013.8.5.&gt;</li> <li>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8.5.]</li> </ol>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lt;개정 2005.10.31., 2008.7.4., 2010.3.18., 2013.8.5.&gt;</p> <p>⑤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국가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으로 각각 3</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8.5.]</p> <p>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p>
182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p><b>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b>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 제11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9. 5. 8, 2012. 10. 10&gt;</p> <p>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농정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lt;신설 2009. 5. 8, 개정 2010. 8. 11, 2011. 12. 30, 2012. 10. 10, 2012. 12. 28, 2014. 6. 27, 2015. 5. 15&gt;</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신설 2014. 6. 27&gt;</p> <p>④ 위촉직 위원은 도 소관 위원회 5개 이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 이내 범위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및 위촉위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할 수 있다. &lt;신설 2014. 6. 27&gt;</p> <p>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여 위촉하고, 해당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lt;신설 2014. 6. 27&gt;</p>
183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13조의5(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b>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p> <p>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p> <p>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p> <p>⑤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13조의4제2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⑥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⑦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
18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p><b>제32조(구성 등)</b>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p> <p>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0년 이상 재직된 정비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li> <li>3. 정비사업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li> </ol> <p>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185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p><b>제2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b>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정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3.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li> <li>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5.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이다.</li> <li>6.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li> <li>7.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i> </ol>
186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p><b>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b>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lt;개정 2014. 12. 26&gt;</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11. 11, 2014. 12. 26&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정책과장, 예산과장 등 관련부서 과장, 3명 이내의 도의 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gt;</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14. 12. 26&gt;</p>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t;개정 2011. 11. 11&gt;</p> <p>1. 특별회계의 운용</p> <p>가. 사업순위 결정과 용자배분 &lt;개정 2011. 11. 11&gt;</p> <p>나. 제14조제2항의 용도의 사용여부 &lt;개정 2011. 11. 11&gt;</p> <p>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lt;개정 2011. 11. 11&gt;</p> <p>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p> <p>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p> <p>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규모 등 &lt;개정 2011. 11. 11&gt;</p>
187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p><b>제12조(감사단의 구성 등)</b> ① 감사단은 5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단 내에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p> <p>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p> <p>2.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p> <p>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반에 관리감사 전담부서 공무원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군수는 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18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p><b>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b>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위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주택업무 관련 국장 2. 국민기초생활 업무 관련 국장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4. 건축사 등으로서 건축구조 및 시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주택관리사로서 주택관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각종 분쟁 및 중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학계 및 법조계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8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b>제6조(감사반의 구성·운영)</b>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19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b>제5조(감사단의 구성 등)</b> ① 감사단은 10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담당팀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91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0조(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b>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당연직으로 한다)</li> <li>2. 전라북도의회 의장 추천하는 3인</li> <li>3.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li> <li>4. 전라북도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3인</li> <li>5. 공동주택분야 업무 경력이 있거나 종사하는 자</li> <li>6. 공동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p>
19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5조(구성)</b> ① 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li> <li>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li> <li>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li> </ol> <p>② 위원장은 해당위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9.30)</p> <p>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9.30)</p>
19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p><b>제1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5. 9. 23&gt;</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5. 9.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li> <li>3.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li> <li>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194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p><b>제51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4.1.1.&gt;</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lt;개정 2014.1.1., 2015.12.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4급 이상 공무원</li> <li>2. 광주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lt;개정 2014.1.1.&gt;</li> <li>3.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lt;개정 2014.1.1.&gt;</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lt;개정 2014.1.1.&gt;</p> <p>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lt;개정 2014.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li> <li>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li> <li>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li> <li>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195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p><b>제18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2.6.15., 2014.12.31., 2015.6.19.&gt;</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lt;개정 2014.12.31.&gt;</p>
19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p><b>제20조의2(소위원회)</b>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13. 11. 0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도시녹화사업계획</li> <li>2.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경관·디자인사업계획</li> <li>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0.11.]</p>
197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p><b>제30조(위원회 운영)</b> ①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자문단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5.8.14.&gt;</p> <p>④ 그 밖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198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p><b>제1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광고물 및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lt;개정 2011.10.15., 2014.9.15.&gt;</p> <p>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19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p><b>제9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li> <li>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li> <li>3.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li> <li>4.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2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장</li> <li>2.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01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p><b>제3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 수가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li> <li>4.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건축사</li> <li>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202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lt;개정 2015.10.8.&gt;          ②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203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08. 7. 7, 2015. 1. 1, 2015. 5.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204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위원의 구성)</b>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205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 등)</b>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광역시재난안전본부장 &lt;개정 2008-08-04, 2015-07-15&gt;</li> <li>2.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li> <li>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li> <li>3.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206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p><b>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b>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lt;개정 2011.5.13., 2011.7.27., 2015.7.1.&gt;</p> <p>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p>
207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2조(위원의 구성)</b> ①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208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p>
209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21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구성)</b> ①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2.5.11.&gt;</p> <p>② 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 관할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도시계획·주택·도로·철도·하천·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과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련분야 및 방재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1.4.7., 2012.12.28., 2014.9.24., 2015.10.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경기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③ 위원의 위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211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12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b>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b>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5. 10. 2>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
213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재해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충청남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5.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14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b>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215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16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b>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b>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결원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217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4.8.7., 2015.7.2.>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218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b>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b>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산불방지 부서 소속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19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b>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b>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강원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내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산불방지협회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녹색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산불방지협회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관리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회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2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b>제1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소방방재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 소지자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된다.
221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b>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이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22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b>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식품등의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이다.</p> <p>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2.7.10.&gt;</p>
223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p><b>제1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정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본조신설 2015.06.17.]</p>
224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li> <li>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25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2조(구성)</b>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p> <p>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5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li> <li>3. 재난 수습활동 자문협회 및 이재민 지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li> <li>2.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형사기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li> </ol>
226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4.12.31., 2015.6.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li> <li>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li> <li>4. 재난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li> </ol> <p>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lt;개정 2014.12.31., 2015.6.19.&gt;</p>
227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운영 조례	<p>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5.12.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li> <li>3. 재난안전분야 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li> <li>4. 재난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li> <li>5. 재난수습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li> </ol> <p>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lt;개정 2015.12.10.&gt;</p>
228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2조(구성)</b>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5.10.13.&gt;</p> <p>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li> <li>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li>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i> </ol>
229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2015.1.2., 2015. 7. 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li> <li>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에 소속된 사람</li> <li>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li> <li>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④ 위촉직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p>
230	(전라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li> <li>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li> <li>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li> <li>④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7.13)</li> <li>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li> <li>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li> <li>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li> </ol> <p>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7.13)</p> <p>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⑧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li> <li>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li> </ol>
231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과 소방본부장으로 한다.</p> <p>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li> <li>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li> <li>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32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lt;개정 2006. 2. 1, 2008. 7. 7, 2008. 7. 30,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5.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구청장·군수를 제외한다)</li> <li>2.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3. 부산지방경찰청장</li> <li>4. 부산지역의 긴급구조지원을 담당하는 육군·해군 및 공군부대의 장&lt;개정 2008. 7. 30&gt;</li> <li>5. 삭제&lt;2008. 7. 30&gt;</li> <li>6. 삭제&lt;2008. 7. 30&gt;</li> <li>7.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시장)</li> <li>8. 시민안전실장&lt;개정 2006. 2. 1, 2008. 7. 7, 2015. 1. 1, 2015. 5. 27&gt;</li> <li>9. 삭제&lt;2015. 1. 1&gt;</li> <li>10. 소방안전본부장&lt;개정 2013. 7. 10&gt;</li> <li>11.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자&lt;개정 2008. 7. 30&gt;</li> </ol> <p>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lt;개정 2008. 7. 30, 2013. 7. 10&gt;</p>
23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 등)</b> ①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 &lt;개정 2008.1.4., 2014.3.7.&gt;</p> <p>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07.10.5., 2008.1.4., 2013.8.16., 2014.3.7., 2014.12.31., 2015.6.19., 2015.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부교육감</li> <li>2. 제32보병사단부사단장</li> <li>3. 대전지방경찰청장</li> <li>4. 행정부시장</li> <li>5. 시민안전실장</li> <li>6. 소방본부장</li> <li>7.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책임자</li> </ol> <p>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재난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lt;신설 2014.03.07.&gt;</p> <p>④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p>

번호	구분	조례규정
		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7.>
234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 등)</b>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2008.6.30., 2013.6.28., 2014.10.16., 2015.12.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부시장</li> <li>2. 시의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li> <li>3. 울산지방경찰청장</li> <li>4. 육군 제127연대장</li> <li>5. 울산광역시교육감</li> <li>6.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li> <li>7.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lt;개정 2014·10·16&gt;</p>
235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p><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3.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lt;개정 2010.10.29., 2012.7.13.&gt;</li> <li>2. 강원도 지방경찰청장</li> <li>3. 강원도 지역관할 사단장</li> <li>4. 강원도 교육감</li> <li>5. 강원도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제외)&lt;개정 2013.7.26.&gt;</li> <li>6. 강원도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t;개정 2013.7.26.&gt;</li> <li>7. 강원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lt;개정 2015.1.2., 2015. 7. 10&gt;</li> <li>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lt;개정 2013.7.26.&gt;</li> </ol> <p>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7.26.&gt;</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lt;개정 2013.7.26.&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3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p><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lt;개정 2006. 12. 22, 2010. 6. 30, 2012. 12. 28, 2013. 6. 28, 2015. 10. 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부지사</li> <li>2.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li> <li>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li> <li>4. 충청북도 지역 관할사단장</li> <li>5. 충청북도 교육감</li> <li>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li> <li>7.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8.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li> </ol> <p>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0. 2&gt;</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lt;개정 2015. 10. 2&gt;</p>
237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p><b>제2조(구성)</b> 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p> <p>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5.5.20.&gt;</p> <p>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환경국장·도시재창조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lt;개정 2014.9.5,2015.5.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li> </ol>
238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 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lt;개정 2006· 6·29, 2008· 6·30, 2013·1·10&gt;</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lt;개정 2006· 6·29, 2010·10·7, 2013·1·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39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p><b>제2조(구성)</b> 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장의 위촉한다. &lt;개정 2013.1.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의회의원</li> <li>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li> <li>4.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240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 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li> </ol>
241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회 의원 1명</li> <li>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li> </ol>
242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녹색자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16명 이내로 한다.</p> <p>④ 위원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⑤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에너지자원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이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243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lt;개정 2012.6.20.&gt;</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5인과 위촉직위원 15인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li> <li>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li> <li>3. 관계행정 공무원</li> </ol>
244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lt;</p> <p>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p> <p>④ 당연직위원 3인은 환경녹지국장·건설교통국장·농축수산물국장으로서 하고, 위촉위원 6인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p>
245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246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24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6.7.8.&gt;</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lt;개정 2011.1.18., 2013.11.27., 2014.8.13., 2016.7.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2. 동·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li> <li>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환경교육 또는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대표 및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48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b>제26조의2(환경보전에 관한 자문)</b>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도록 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8.> 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49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b>제1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실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50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b>제31조(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b> ①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녹색도시부산21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시에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녹색도시부산21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녹색도시부산21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녹색도시부산21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구·군등의 지방의제21 활성화 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회장 3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회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중 2명으로 하여 3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⑤ 위원은 도시계획실장 및 기후환경국장과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회장이 정한다.
251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b>제32조(부산녹색환경상)</b> 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부산녹색환경상(이하 “환경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환경상은 녹색가족부문, 녹색단체부문, 녹색기업부문 등 3개 부문으로 하고, 대상 1명과 각 부문별 본상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의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환경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총장·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2. 언론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언론인 3.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환경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환경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5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b>제19조(설치 및 구성)</b>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5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b>제3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위원장은 서부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③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위원 17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54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b>제27조(설치 및 구성)</b> ①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녹색경남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3명 이내의 회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서부부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남·여 각 1명으로 하며, 호선된 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5.4.30.> 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환경산림국장 및 도시교통국장 <개정 2011.12.29., 2013.01.31.> 2. 도교육청 교육국장 3.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방의제21 관련업무 담당국장
255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b>제7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8. 3>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56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b>제7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번호	구분	조례규정
	기본조례	<p>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중 당연직 위원장은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li> <li>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li> <li>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li> <li>6.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li> <li>7.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li> <li>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li> <li>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li> <li>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li> </ol>
257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8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b>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lt;개정 2013-07-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행정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당연직 위원이 된다. &lt;개정 2011-02-14, 2014-12-15&gt;</li> <li>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li> <li>5.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258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1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li> <li>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259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5조(위원회)</b>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③ 위원장 2명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하여 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대기과장이 된다. &lt;개정 2010.12.31., 2015.4.17., 2016.4.12.&gt;</p> <p>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5.8.14.&gt;</p> <p>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260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3·6·5&gt;</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li> <li>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13.6.5&gt;</p> <p>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3.6.5., 2015.6.30.&gt;</p> <p>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li> <li>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261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li> <li>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li> <li>5.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li> <li>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li> <li>⑦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li> <li>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l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시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li> <li>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ol>
262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9조(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lt;개정 2012.7.13.&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li> <li>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지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12.7.13.&gt;</p> <p>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p> <p>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강원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강원도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li> <li>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263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8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p> <p>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체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264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p><b>제10조(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li> <li>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⑦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5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b>제9조(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b>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b>제10조(구성 및 임기)</b>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부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단, 공무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66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b>제10조(전라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생태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서면위임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67	(전라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b>제9조(구성 및 운영)</b>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소속으로 전라남도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6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번호	구분	조례규정
		한다.
269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p><b>제10조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 설치)</b> 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하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이하 “보급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보급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해 시·군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 련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 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3인 이내</li> <li>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6인 이내</li> <li>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인 이내</li> </ol> <p>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보급협의회를 대표한다.</p> <p>⑤ 보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명령에 관한 사항</li> <li>3.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li> <li>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사용자동차 교체 승인에 관한 사항</li> <li>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li> </ol> <p>⑥ 위원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 심의케 할 수 있다.</p>
270	(전라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	<p><b>제13조(보급협의회 구성)</b> ① 보급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4)</p> <p>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0.4)</p> <p>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시·군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10.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3인 이내</li> <li>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4인 이내</li> <li>3.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개정 2013.10.4)</li> </ol> <p>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10.4)</p>
271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b>제8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활성화 및 지원조례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으로 한다.</p>
272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p><b>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폐기물관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등의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273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p><b>제17조(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b>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시책에 관한 사항</li> <li>2.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 등에 관한 사항</li> <li>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 관련 갈등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li> </ol> <p>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환경녹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⑤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⑨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⑩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4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b>제16조(기금운용협의회 구성 등)</b>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에 각 폐기물처리시설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10.> ③ 협의회 위원장은 시의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8.5., 2012.7.10., 2012.10.15.> 1. 시 업무소관과장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자치구 소관 국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7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b>제36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b>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환경정책과장, 폐기물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6. 3. 21.)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7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b>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b>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써 선임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p> <p>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그 밖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p>
27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p><b>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b>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1.1.18., 2014.8.13.&gt;</p> <p>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도의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이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p>
278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p><b>제7조(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b>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li> <li>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li> <li>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ol> <p><b>제8조(구성 및 임기)</b></p> <p>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의장은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의장 1명은 도 환경교육 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4.9.24.&gt;</p> <p>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교육 담당국장 및 평생교육 담당국장, 교육청 본청 환경교육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각 1명</p> <p>2.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p>
279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조례	<p><b>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b>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1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도 관계 공무원,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환경시민단체 임직원,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280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조례	<p><b>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b>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도 관계 공무원,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환경시민단체 임직원,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281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p><b>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b>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1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의원, 도 관계 공무원,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환경시민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28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p><b>제5조(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b>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b>운용 조례</b></p>	<p>하기 위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li> <li>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li> <li>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③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li> <li>④ 위원은 환경분야 또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li> <li>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li> <li>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li> <li>⑦ 도지사는 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li> <li>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li> <li>3. 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사업</li> </ol> </li> </ol> </li> </ol>
283	<p style="text-align: center;"><b>(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b></p>	<p><b>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③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및 수질보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1.6.&gt;</li> <li>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i> <li>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li> </ol>
284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b></p>	<p><b>제2조(위원회 구성)</b>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i> <li>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285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b>제2조(위원회의 운영 등)</b> ①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6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예관한조례	<b>제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5. 환경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
287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88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b>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광주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89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b>제2조(위원회 구성 등)</b> ①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환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290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b>제2조 (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29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4.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보고 및 관계전문가 회의 총괄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92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위원회 구성)</b> ①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293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b>제3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녹색자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또는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환경관련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3.7.26.>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되

번호	구분	조례규정
		고, 심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294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p><b>제2조(위원회 구성)</b> ①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p> <p>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③ 당연직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0. 1. 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li> <li>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li> <li>3. 환경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li> </ol>
295	(충청남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p><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보고 및 관계전문가 회의 총괄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p>
296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전라남도 환경관련 국장을, 위촉직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전라남도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p>
297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을 1명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4. 환경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98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b>제2조(위원회의 위원 등 위촉)</b> ①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9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b>제2조(구성)</b>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경분쟁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30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b>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상 60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6조에 따른 조정요청 3.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1.>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301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p><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4급 이상의 관계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302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p><b>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b> 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2.31.&gt;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12.31.&gt;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16.6.10.&gt;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3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b>제 1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b> <개정 2014.1.3.> ① 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강원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3.>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녹색자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14.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시장·부군수는 해당 시군 대상사업에서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3.>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3.> ⑧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4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b>제20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b> 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등의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도의원을 포함한다)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8., 2009.08.13., 2010.11.04., 2012.10.04., 2013.01.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개정 2012.10.04.> 2. 제15조에 따른 이의 신청 <개정 2012.10.04.>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조례규정
		<p>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lt;개정 2021.10.04.&gt;</p> <p>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lt;개정 2014.10.10.&gt;</p> <p>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2.10.04.&gt;</p> <p>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lt;개정 2012.10.04.&gt;</p> <p>⑩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lt;개정 2012.10.04.&gt;</p> <p>⑪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12.10.04.&gt;</p>
30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p><b>제1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지하수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30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p><b>제15조(조사단의 구성)</b>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p> <p>③ 사후관리시에는 사후관리단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④ 단장 및 부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p> <p>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사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는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조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조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p>
30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위촉직 위원 없음. 해당 무	<p><b>제9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b>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308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p><b>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lt;개정 2014.9.24.&gt;</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축산산림국장·교육청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토피 관련 의학적 전문가</li> <li>2.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li> <li>3. 아토피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li> <li>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li> <li>5. 그 밖에 아토피 사업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도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p>
309	(울산광역시)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각계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1.11.22&gt;</p> <p>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6.30.&gt;</p>
310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회의회장,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내 기관 또는 단체의 장</li> <li>2. 법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1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p><b>제3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16.6.10.&gt;</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의회의장</li> <li>2. 대전광역시교육감</li> <li>3. 육군제32보병사단장</li> <li>4. 국군제607기무부대장</li> <li>5. 국가정보원대전지부장</li> <li>6.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li> <li>7. 대전지방경찰청장</li> <li>8. 대전지방교정청장</li> <li>9. 대전지방보훈청장</li> <li>10.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li> <li>11. 대전광역시소방본부장</li> <li>12.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li> <li>13.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 기관·단체장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단체장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31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회 의원</li> <li>2. 경기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성폭력 예방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313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li> <li>2.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li> <li>6.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위촉위원은 아동복지전문기관이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p>
31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p><b>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b>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p>
315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p><b>제11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아동보호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구광역시 아동보호 관련 업무 담당국장</li> <li>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아동보호 관련 담당국장</li> <li>다. 대구지방경찰청 아동보호 관련 담당과장</li> </ol> </li> <li>2. 위촉직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li> </ol> </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나. 사법기관 전문가(변호사, 검찰관계자, 법원관계자 등) 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관련 기관·시설의 장 라. 의료계 전문가(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 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16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2. 충청남도 교육감 3. 충청남도 지역관할사단장 4.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5. 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재난안전실장 6.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2에 규정된 기관의 장 <개정 2015.10.30.> 7.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317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2. 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 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4. 전라남도지역 관할군부대 사단장 5. 전라남도교육감 6.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7.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재난담당과장이 된다.</p>
318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p><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li> <li>2. 도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lt;개정 '06.12.28, '09.4.23, '11.5.30&gt;</li> <li>3.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li> <li>4. 제50보병사단장</li> <li>5. 경상북도교육감</li> <li>6.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장을 제외한다)</li> <li>7.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li> </ol> <p>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319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p><b>제3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2.10.04.&gt;</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lt;개정 2012.10.04.&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행정부지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및 소방본부장,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육군39사단장, 경상남도 교육감이 된다. &lt;개정 2007.6.28., 2009.6.25., 2010.11.4., 2011.12.29., 2012.10.4., 2013.1.31., 2013.8.8., 2014.8.7., 2015.7.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li> <li>2.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lt;개정 2012.10.04.&gt;</li> </ol> <p>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0.04.&gt;</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lt;개정 2012.10.04., 2013.08.08.&gt;</p>
320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p><b>제12조(협의회 구성 등)</b>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대행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의 안전문화 진흥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li> <li>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321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p><b>제15조(안전교육문화진흥 실무협의회)</b>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안전교육문화진흥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문화 진흥 담당과장이 된다.</p> <p>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li> <li>2.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li> <li>3. 그 밖의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li> </ol> <p>④ 실무협의회 간사는 도의 안전문화 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p> <p>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를 준용한다.</p>
322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p><b>제9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건강 및 질병 관련 전문가</li> <li>2.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li> <li>3.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li> <li>4.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li> <li>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li> <li>6.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관련 도 정책 담당 국장</li> <li>7.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32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p><b>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함에 있어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lt;개정 2007. 7. 25&gt;</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lt;개정 2007. 7. 25&gt;</p>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p>
32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p><b>제17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b>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담당서기관이 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 위원은 분야별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의원</li> <li>2. 도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li> <li>3.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li> <li>4.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li> </ol>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325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p><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정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li> <li>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li> <li>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을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li> <li>4. 위원이 제16조의2제12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li> <li>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li> <li>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ol>
326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p><b>제16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b>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가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의 범위로 구성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시·군의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과장 및 시의 국장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li> <li>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li> <li>6.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li> </ol> <p>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⑧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설계 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⑨ 분과위원회는 제9조5호에서 정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1.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p> <p>2.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하지 않는다.</p> <p>3.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위원을 분과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4.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p> <p>5.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6.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p> <p>7. 도지사는 설계심의를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p> <p>⑩ 분과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p> <p>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p> <p>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⑪ 당사자는 분과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⑫ 분과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327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안별로 서부산개발본부장 또는 창조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및 구·군 소속의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p> <p>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p> <p>4. 건설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5.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p> <p>6.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32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은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p> <p>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p>
329	<p>(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b>제5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p> <p>2.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p> <p>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p>
330	<p>(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p>	<p><b>제2조(위원회 구성)</b> 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③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삭제 <2015. 10. 30>
33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b>제7조(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332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b>제 1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시 소속 공무원 3. 시 교육청, 법무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자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관광업계 대표, 거주 외국인 등 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33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b>제2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투자유치담당,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 3.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334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과학경제국장, 도시재생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8.14.,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4.12.>
335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b>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b>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36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3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기획조정실장, 경제·건설관련 국장과 건설교통부 및 나주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 7. 15) 1.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자



번호	구분	조례규정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3. 이전공공기관 임원 및 그 밖의 입주기관, 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37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b>제1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시 소속 공무원 3. 시 교육청, 법무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자 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관광업계 대표, 거주 외국인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38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b>제2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③ 당연직위원은 투자유치담당,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전문단체의 임직원 3.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339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b>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2.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 담당국장 3.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장 4. 교수·상공인 및 도시 글로벌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제기구 소속직원 및 국제협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7.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340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p><b>제10조(심의회의 구성)</b>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li> <li>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li> </ol> <p>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p> <p>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341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lt;개정 '13.11.11&gt;</p> <p>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 관련학과 대학교수</li> <li>2. 지역개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li> <li>3. 도의원</li> <li>4. 그 밖의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li> </ol>
34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p><b>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b>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2. 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li> <li>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p> <p>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관리 공무원</li> <li>2. 제20조에 의해 구성된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li> <li>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li> </ol>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p> <p>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p> <p>⑥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343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b>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p> <p>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관리 공무원</li> <li>2.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li> <li>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li> </ol>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p>
344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p><b>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환경·도시·교통, 시정홍보 등 도시브랜드업무 관련 국장 또는 본부장</li> <li>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li> <li>3. 도시디자인, 경영, 문화관광, 환경, 행정서비스 등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345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도시브랜드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li> <li>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li> <li>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346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b>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47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b>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48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b>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49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b>제17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b>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5.1.2.> 2. 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번호	구분	조례규정
		<p>3.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p> <p>4.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안전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3.7.26.&gt;</p> <p>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350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p><b>제21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1. 시의회 의원</p> <p>2. 시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p> <p>3.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p> <p>4.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351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p><b>제21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b>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7.)</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7.7.)</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7.)</p> <p>⑤ 위원회는 당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에 대한 안전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7.)</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7.)</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6.7.7.)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7.) ⑨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7.) ⑩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7.)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7.7.)
352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10.1, 2008.1.1>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타지역 도시철도분야의 자문위원이나 도시철도업무를 수행한 유경험자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개정 2008.1.1.> 2.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인사나 교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53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b>제4조(위원장 등의 선임)</b> 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과 충청남도 도청이전 업무담당 실·단·본부장을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편입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 2.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보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자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담당 과·부장, 홍성·예산군 부군수 등 공무원이 된다.
354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b>제9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관계 실국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으로 한다
355	(세종특별자치시) 리·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이·통장,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상호 겸직할 수 없다.
356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b>제1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안 전자치행정·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여성·농정·경제진흥·건설방재 분야 등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강원도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 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357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b>제18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358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b>제1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자문위원회는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정책, 축제, 문화재, 체육을 포함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359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b>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b>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0)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7.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 (개정 2008.7.30)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3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관계공무원, 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9.3.18) ③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08.7.30., 2009.3.18., 2015.7.30.>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5.7.30.>
360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b>제3조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0.7.24.> ③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 약간명, 경기도 소속공무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4.> ④ 도지사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안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7.24.> ⑤ 공무원과 임시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61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b>제17조 (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도시·주택·경제·복지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임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362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p><b>제20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교육감</li> <li>2. 광주광역시의원 2명</li> <li>3. 광주광역시경찰청장</li> <li>4. 광주광역시 부서별 실장·국장</li> <li>5. 어린이·청소년 각 대표 2명,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li> </ol> <p>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363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p><b>제18조(위원회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건강국장과 도시재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4.9.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입주자 대표</li> <li>3. 사업 주체</li> <li>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5.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li> <li>6.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364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분양등에 관한 조례	<p><b>제4조(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0. 7. 30, 2014. 10. 22&gt;</p> <p>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시설용지 분양 담당실국장</li> <li>2. 당해 산업단지 소재 시·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국장</li> <li>3.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4. 한국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임직원 5. 당해 시·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 6. 기타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365	(대구광역시) 산업용지확충 등에 관한 조례	<b>제9조(구성)</b> ①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두는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당국장 <개정 2014.11.10., 2015.12.30.>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 이상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명 이상 <개정 2015.12.30.>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 : 2명 이상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 2명 이상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 2명 이상 <개정 2015.12.30.> 바.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 2명 이상 사.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 2명 이상 <신설 2015.12.30.>
366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b>제8조(산업입지심의회)</b> ① 산업입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이하 “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2. 30> 1. 산업단지의 개발·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조비용의 종류 및 비율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가수요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신설 2009. 12. 30>

번호	구분	조례규정
		<p>6. 그 밖에 위원장이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lt;2009.12. 30&gt;</p> <p>② 산업입지심의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산업입지심의회의의 위원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0. 7. 6, 2011. 3. 23, 2015. 1. 1, 2015. 5. 27&gt;</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산업입지심의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산업입지심의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산업입지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산업입지심의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입지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367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조례	<p><b>제6조(구성)</b>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경제, 설계, 새꿈도시 조성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명 이내(개정 2015.5.14)</li> <li>2. 농촌경제, 지역개발, 전기(에너지), 도시계획, 조경, 복지 분야 전문 교수 6명 이내</li> <li>3. 지역개발 분야 유관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 각 1명 이내</li> <li>4. 전라남도의회 의원 2명 이내</li> </ol>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꿈도시 조성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5.5.14., 2015. 12. 31.)</p>
368	(경기도) 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p><b>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b>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p> <p>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 3에 따른다. &lt;개정 2014.5.2.&gt;</p> <p>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lt;개정 2012.5.11.&gt;[본조신설 2009.12.31.]</p>
369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p><b>제10조(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b>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설치한다.</p> <p>②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협약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생태국장, 도시재생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08.1.1.,2010.8.5., 2011.7.27., 2012.10.15.,</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2014.9.1., 2016.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li> <li>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인</li> <li>3. 분야별 조성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li>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인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으로 한다.</li> <li>⑤ 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약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중심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lt;개정 2008.1.1., 2010.8.5., 2011.7.27., 2012.7.15., 2012.10.15.&gt;</li> </ol>
370	<b>(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b>	<p><b>제4조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다.</p>
371	<b>(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b>	<p><b>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b>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사무국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회장이 추천한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lt;개정 2010.6.25., 2012.7.13., 2013.10.25., 2015. 7. 10&gt;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7.6.]</p>
372	<b>(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b>	<p><b>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b>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본부·실·국장이 된다. &lt;개정 2015.07.02.&gt;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li> <li>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5.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37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b>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b>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2.12.31.> 1. 소상공인지원과장 2. 민생경제과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74	(세종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	<b>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b>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 임원 2. 중소기업중앙회 세종지역본부 임원 3. 상공회의소 세종지역본부 임원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5. 관내 소재 금융기관 임직원 6. 중소기업경영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금융 또는 경제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375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3. 5 조례 제3099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73호)</p> <p>② 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6호) ③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조례 제3478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무와 관련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 단 공무원인 위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4.20 조례 제4150호)</li> <li>2.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li> <li>3. 당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4.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li> <li>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신설 2012. 2. 29 조례 제4333호]</li> <li>6. 기타 당해 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2. 2. 29 조례 제4333호]</li> </ol>
376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p><b>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13-07-29&gt; &lt;개정 2015-07-27&gt;</p> <p>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 중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을 말한다. &lt;신설 2015-07-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경력 20년 이상의 해당분야 5급 기술직렬 공무원</li> <li>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li> <li>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⑤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정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15-07-27&gt;</p> <p>⑥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p> <p>⑦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lt;신설 2013-07-29&gt;</p>
377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3조 (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7· 8· 2, 2010·7·8&gt;</p> <p>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lt;개정 2006· 8·10, 2014·4·8&gt;</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1997· 9·29, 1999·12·31, 2006· 8·10, 2010·7·8, 2014·4·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무에 관련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기술사·건축사자격이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li> <li>2. 건설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li> <li>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li> <li>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li> <li>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7. 그 밖에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lt;신설 2006· 8·10, 개정 2010·7·8, 2014·4·8&gt;</p>
378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p><b>제4조(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lt;개정 2011.01.01., 2013.7.15.&gt;</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p> <p>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p> <p>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p> <p>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p> <p>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7.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8.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취득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p>9.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p> <p>④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379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1996. 1. 18, 2010. 5. 7, 2014. 10. 31&gt;</p> <p>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1996. 1. 18, 1999. 10. 1, 2006. 7. 14, 2007. 2. 2, 2008. 7. 10&gt;</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1999. 10. 1, 2001. 1. 5, 2014. 10. 31&gt;</p> <p>1. 건설업무와 관련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의 5급이상공무원</p> <p>2.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p> <p>3. 당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p> <p>4.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lt;개정 2009. 4. 3&gt;</p> <p>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lt;신설 2006. 7. 14&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lt;개정 1997. 12. 31&gt;</p> <p>④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안전심의에 한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 &lt;신설 1999. 10. 1&gt;</p>
380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p><b>제16조의4(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b> ①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0. 31, 2016. 5. 9&gt;</p> <p>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5. 9&gt;</p> <p>③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p> <p>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 직렬 공무원</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lt;개정 2014. 1. 6&gt;</p> <p>⑥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위원회 심의·운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p> <p>1.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2. 소위원회 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전을 심의할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p> <p>3.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p> <p>4. 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p> <p>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6.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p> <p>7.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⑧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7], &lt;개정 2016. 5. 9&gt;</p>
381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14.9.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및 관할 시·군 소속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li> <li>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li> <li>6.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li> <li>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8.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9.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10.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li> <li>11.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li> </ol>
382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제5조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도 및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13.5.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li> <li>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li> <li>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li> </ol> <p>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이를 전문분야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383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1996.5.9., 1999.1.14., 2007.6.28., 2009.8.13., 2010.3.25., 2014.10.10.&gt;</p> <p>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lt;개정 1996.5.9., 1997.12.31., 1999.1.14., 2007.6.28., 2008.7.3., 2010.3.25., 2010.11.4., 2013.1.31., 2014.8.7., 2014.10.10.&gt;</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00.6.10., 2007.6.28., 2010.3.25., 2014.10.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lt;개정 1996.05.09.&gt; &lt;개정 2011. 11. 10&gt;</li> <li>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li> <li>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lt;개정 2010.3.25., 2014.10.10.&gt;</li> <li>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lt;개정 2010.3.25., 2014.10.10.&gt;</li> <li>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lt;개정 2010.3.25., 2014.10.10.&gt;</li> <li>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lt;개정 2009.8.13., 2010.3.25., 2014.10.10.&gt;</li> <li>7.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lt;개정 2000.06.10., 2010.03.25.&gt;</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384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b>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b> 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1.11.10., 2014.10.10.&gt;</p> <p>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lt;개정 2012.10.11., 2014.10.10.&gt;</p> <p>③ 분과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lt;개정 2014.10.10.&gt;</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lt;개정 2014.10.10.&gt;</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lt;개정 2012.10.11., 2014.10.10.&gt;</li> </ol> <p>⑤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lt;신설 2012.10.11.&gt;</p> <p>⑥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0.11., 2014.10.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lt;신설 2014.10.10.&gt;</li> <li>2.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의 위원은 2명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lt;신설 2014.10.10.&gt;</li> <li>3.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그 명단을 지체 없이 공개한다. &lt;개정 2014.10.10.&gt;</li> <li>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다. &lt;개정 2014.10.10.&gt;</li> <li>5.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다. &lt;개정 2014.10.10.&gt;</li> <li>6. 도지사는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 &lt;개정 2014.10.10.&gt;</li> </ol> <p>⑦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12.10.11.&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385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7.12.31&gt;</p> <p>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조경제본부장이 된다. &lt;개정 2002.5.23., 2006.10.12., 2008.6.30., 2010.12.31., 2014.12.31., 2015.12.31.&gt;</p> <p>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실·국장중에서 각각 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울산광역시회의의원 2명과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lt;개정 2007.12.31&gt;</p>
386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lt;개정 2012.3.5., 2014.9.24.&gt;</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0.4.19., 2011.5.3.&gt;</p> <p>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주택실장(5명) [신설 2010.4.19.] &lt;개정 2011.6.2., 2012.3.5., 2012.12.28., 2013.5.1., 2014.9.24., 2015.4.30.&gt;</p> <p>2. 위촉직 위원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경기도의회 의원, 그 밖의 산업입지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2명) [신설 2010.4.19.] &lt;개정 2011.5.3.&gt;[전문개정 2008.12.30.]</p>
387	(경상남도)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p><b>제3조(구성)</b>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미래산업본부장,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환경산림국장, 도시교통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lt;개정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4.10.10., 2015.7.2., 2015.12.17.&gt;</p> <p>1. 도의회의원 2. 경남발전연구원 임원 3.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임원 4.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임원 5. 경상남도개발공사 임원 6.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lt;개정 2014.10.10.&gt;</p>
38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p><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도시국장으로 한다. &lt;개정 2014.12.11., 2015.5.14.&gt;</p> <p>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p>
389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p><b>제4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시민·기업·행정 분야별 각 1명의 공동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 중 운영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의 위원은 상임회장이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시장, 환경녹지국장</p> <p>2. 위촉직 위원</p> <p>가.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 중 1명</p> <p>나.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지식과 추진역량을 가진 사람</p> <p>다. 시민, 전문가, 기업인,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p> <p>③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민대표가 상임회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한다.</p> <p>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상임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390	(충청남도) 지속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p><b>제7조(구성)</b> ① 협의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실·과장을 임명한다. &lt;개정 2016.6.30.&gt;</p> <p>② 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p> <p>1. 협의회 임원은 대표회장, 공동회장 및 부회장 각 1명과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정기총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2.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대표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2.01.05.&gt;</p> <p>3. 제2호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도 소관업무 관련과장으로 한다.</p> <p>4.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lt;개정 2012.01.05.&gt;</p> <p>③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 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39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p><b>제15조(위원장 및 위원)</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금융·회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4.6.&gt;</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민생경제교통과장, 회계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금융·회계분야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06.5.4, '09.4.23, '11.5.30, '11.12.26, 2015.4.6.&gt;</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나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392	(경상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0조(구성)</b>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 도지사</li> <li>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li> <li>3. 위원</li> </ol> <p>가. 당연직 위원(도) : 서부권개발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도시교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나. 당연직 위원(외부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남부지방산림청장(함양·양산국유림관리소) 다. 위촉직 위원 :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393	(전라남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0조(설치 및 구성)</b>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 : 지역개발업무와 관련된 국장, 농지·환경·산림·문화·관광 업무와 관련된 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li> <li>2. 위촉직 위원 : 국토계획·도시·건축·교통·관광·과학기술·금융·환경, 국방·군사시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④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394	(전라남도) 지역개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p><b>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배후)단지 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일반산업(배후)단지 지원기금 조례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라남도 투자정책국장</li> <li>2.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개정 2015.7.13)</li> <li>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li> <li>4. 전라남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li> <li>5. 기타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li> </ol> <p>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p>
395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	<p><b>제18조(위원장 및 위원)</b>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1. 2. 7&gt;</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도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과장·회계과장·보건의료과장·일자리경제정책관·관광총괄과장·지역정책과장·환경보건과장 등 관계 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lt;개정2007. 2. 2, 2007. 8. 3, 2010. 7. 30, 2013. 10. 4, 2014. 10. 22&gt;</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396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	<p><b>제10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b> ①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소속 국장급 공무원,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p>
397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20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b>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398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18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b></p> <p>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5명</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399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p><b>제6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lt;개정 2010.10.29., 2012.7.13., 2015. 7. 24, 2015. 10. 8.&gt;</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10.11.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li> <li>2.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lt;개정 2010.11.12.&gt;</li> <li>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lt;개정 2010.11.12.&gt;</li> <li>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lt;개정 2010.11.12.&gt;</li> <li>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lt;개정 2010.11.12.&gt;</li> </ol>
400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p><b>제18조(구성)</b> &lt;개정 2012.7.2.&gt;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lt;개정 2012.7.2.&gt; [후단신설 2016.05.17.]</p> <p>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 소속 건설업무 관련 실·국장이 된다. &lt;개정 2011.1.10., 2012.7.2.&gt;</p> <p>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2.7.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소속 건설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건설본부 및 사업소의 건설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경기도시공사의 건설업무관련 임원 &lt;개정 2011.1.10., 2012.7.2.&gt;</li> <li>2. 경기도의회 의원 3명 &lt;개정 2012.3.5., 2012.7.2.&gt;</li> <li>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lt;개정 2012.7.2.&gt;</li> <li>4.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lt;개정 2011.1.10., 2012.7.2.&gt;</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t;개정 2012.7.2.&gt;</li> </ol>
401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구성)</b> &lt;개정 2013.12.26.&gt;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12.31., 2013.12.26.&gt;</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원 총 수의 60퍼센</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8.8., 2013.12.26., 2014.8.7., 2015.7.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lt;개정 2013.12.26.&gt;</li> <li>2.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lt;개정 2009.12.31.&gt;</li> <li>3. 건설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lt;개정 2009.12.31.&gt;</li> <li>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lt;개정 2009.12.31.&gt;</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lt;신설 2009.12.31.&gt;</li> </ol>
402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p><b>제10조(협의회 구성)</b>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공공공사 발주기관, 건설협회 등 건설산업 관계자들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13.11.11&gt;</li> <li>③ 협의회 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lt;개정 2015.07.02.&gt;</li> <li>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li> <li>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13.11.11&gt;</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지원국장&lt;개정 '13.11.11&gt;</li> <li>2. 대구지방조달청장</li> <li>3.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 본부장</li> <li>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li> <li>5.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li> <li>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li> <li>7.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li> <li>8.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li> <li>9.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li> <li>10. 대한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lt;개정 '13.11.11&gt;</li> <li>11.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lt;신설 '13.11.11&gt;</li> <li>12. 경상북도의회 의원&lt;신설 '13.11.11&gt;</li> <li>13. 그 외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lt;개정 '13.11.11&gt;</li> </ol> <p>⑥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403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p><b>제1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04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b>제11조(활성화위원회의 구성)</b> (개정 2014. 3. 3 조례 제4567호) ① 활성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67호)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시의원 혹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0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b>제8조(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28.>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은 시 및 자치구 건설산업 관련 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대전도시공사 건설산업 관련 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14., 2008.12.26., 2009.4.13., 2014.10.28.> 1. 시·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 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6.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06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b>제7조 (발전위원회 구성)</b>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5.>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제목개정 2015.11.5.]
407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b>제11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본청(군·구를 포함한다) 소속 건설·산업관련 국장, 사업소의 건설·산업관련 4급 이상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공단의 건설산업 관련 임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인 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08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b>제10조(구성)</b> (개정 2013.7.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5)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5, 2013.7.5, 2015.7.13)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3.7.5)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13.7.5)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13.7.5)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3.7.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3.7.5)
40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b>제11조(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관·대형건설업체의 관련자 5.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조변변경 2009.9.30.>
410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b>제12조(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8, 2012. 10. 10> ②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 11>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에서 이동 <2010. 2. 19>] [중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 2. 19>]
4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b>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b>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번호	구분	조례규정
		<p>&lt;개정 2009.10.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li> <li>2.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li> <li>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천하는 자</li> <li>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li> <li>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41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p><b>제10조(구성과 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lt;개정 2015.1.29.&gt;</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서부권개발본부장, 해양수산국장, 도시교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lt;개정 2011.12.29., 2013.01.31., 2013.03.28.&gt;</li> <li>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3명,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 및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5.1.29.&gt;</li> <li>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회 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15.1.29.&gt;</li> <li>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li> <li>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li> <li>⑧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lt;신설 2015.1.29.&gt;</li> </ol>
413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b>제20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b>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p>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누설행위 발생 시 해촉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414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p><b>제11조(구성 및 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회 의원</li> <li>2. 시 공무원</li> <li>3.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원이 된다.</p> <p>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41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p><b>제20조(구성 및 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5.1.5., 2008.9.30.&gt;</p> <p>② 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8.9.30., 2016.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li> <li>2. 시 공무원</li> <li>3. 도시계획, 건축, 환경·조경·교통·교육·문화·역사·재정·복지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li> </ol> <p>④ 제3항제1호의 시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lt;개정 2008.9.30., 2016.7.14.&gt;</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원이 된다.</p> <p>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9.30.>
41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p><b>제1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련 있는 제주자치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li> <li>2.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자</li> <li>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li> </ol>
41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p><b>제10조(구성과 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09.06.01., 2011.01.0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은 도 경제산업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서 한다.</li> <li>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li> <li>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li> <li>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li> <li>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lt;개정 2013.7.15.&gt;</li> </ol>
418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p><b>제15조(구성과 운영)</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li> <li>2. 위촉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충청북도정책자문단 위원 2명, 지역발전연구센터 2명,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li> <li>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p>꺀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p> <p>[본조신설 2012. 3. 30] [중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lt;2012. 3. 30&gt;]</p>
419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업무담당국장</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li> <li>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li> </ol>
420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의 실·국장</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li>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li> </ol> <p>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p>
421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p> <p>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li> <li>2. 경상북도의회 의원</li> <li>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li> <li>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422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 3급이상 공무원</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li> <li>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li> </ol>
423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지적재조사업무관련 실·국·본부장</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li> <li>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li> </ol>
424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울산광역시의 3급 이상 공무원</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li> <li>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li> </ol>
425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p>
426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p><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번호	구분	조례규정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업무 및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427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b>제4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428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2조(구성)</b> 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분야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429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제4조(구성)</b>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며, 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재조사사업무관련 실·국·본부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번호	구분	조례규정
430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p><b>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관리 담당국장, 고압가스 담당국장, 위험물관리 담당국장, 화학물질 관련 측정·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회 의원</li> <li>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li> <li>3.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li> <li>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i> </ol>
431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p><b>제7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국장급 각 1명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장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li> <li>3.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li> <li>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li> <li>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432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p><b>제5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소방본부장</li> <li>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li> </ol> </li> <li>2. 위촉직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li> <li>나.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li> <li>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li> <li>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li> </ol>

번호	구분	조례규정
433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p><b>제12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 중 정책기획관, 민생경제교통과장, 신성장산업과장, 관광진흥과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12.12.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민간단체 대표</li> <li>2. 자전거 부품·소재 등 기술개발 관련 대학·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li> <li>3. 유관기관 관계공무원</li> <li>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간사는 자전거 관련 정책기획 및 총괄·조정 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434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p><b>제22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0.8.5.,2011.7.27.,2012.10.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li> <li>2. 관계기관 공무원(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lt;개정 2012.7.10.&gt;</li> <li>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li> <li>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43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p><b>제14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6. 6. 8&gt;</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서부산개발국장, 교통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08. 7. 7, 2015. 1. 1, 2016. 6. 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li> <li>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li> <li>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실천하는 시민단체 대표</li> <li>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lt;개정 2016. 6. 8&gt;</p>

번호	구분	조례규정
436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p><b>제2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li> <li>2. 유관기관 공무원(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등)</li> <li>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li> <li>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437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p><b>제17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1.6.29.&gt;</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lt;개정 2011.6.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li> <li>2. 유관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li> <li>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li> <li>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p>
438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p><b>제15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lt;개정 2014.10.20., 2016.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li> <li>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li> <li>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li> <li>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li> </ol> <p>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43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조례	<p><b>제15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p>

번호	구분	조례규정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개정 2014.10.20., 2016.1.7.>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